

남북교역 실무안내

제 목

목 차

I. 남북교류협력 기반형성	5
1. 남북교류협력 개황	5
2. 남북교역제도 발전	7
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7
나. 남북경협 4개 합의서 서명	10
다. 남북교역 여건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12
II. 남북교역 및 수송 현황	19
1. 단순물자교역	19
가. 추진현황	19
나. 교역형태·품목	21
2. 위탁가공교역 현황	24
3. 수송장비 운행 현황	26
가. 개 황	26
나. 남북간 선박운항	28

III. 남북교역 절차	30
1. 북한주민접촉 및 남북왕래	30
가. 북한주민접촉	30
나. 남북한 왕래	35
2. 남북교역	44
가. 남북교역의 개념	44
나. 남북교역의 당사자	45
다. 남북교역 대상물품의 구분	46
라. 남북교역 추진절차	48
마. 위탁가공교역	63
3.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	65
가. 지원대상	65
나. 지원조건 및 지원제외 대상	65
다. 지원절차	67
〈참고자료〉	
■ 남북교역의 역사	69
〈부록 1〉	
■ 남북교역 관련 서식	75
1.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관련서식	77
2. 남북교역 및 수송장비운행 관련서식	98
3. 자금대출 신청서	115

〈부록 2〉

■ 남북교역 관련 법규	117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19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127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47
4.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150
5.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152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165
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174
8.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177
9.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179
10.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187
11.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	194
12. 남북협력기금법	198
1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202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208
15.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210
16.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230

I. 남북교류협력 기반형성

1. 남북교류협력 개황

남북간 교류협력은 우리 정부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천명함에 따라 시작되게 되었다. 정부는 「7·7선언」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그해 10월 「대북경제개방조치」로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고, 1989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제3국을 통한 북한주민 접촉과 교역이 제도적인 틀내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남북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제도화시키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8.1 제정),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1990.9.25 제정) 등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7·7선언」과 그 후속조치들로 이어진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조성 노력은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인해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1994년 11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비롯한 실질적 후속조치들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1995년 4월 그동안 남북교역에 참여해온 업체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인증범위를 완화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교역품목통관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였으며, 지방상공인의 남북교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4월 지방소재 한국무역협회 10개 지부에 남북교역 상담창구를 개설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외무역법」 개정 및 남북한 교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1997년 4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의 품목구분을 '포괄승인품목'과 '승인요하는품목'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자동승인품목(포괄승인품목)에 대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해 오던 반출·입 승인 제도의 폐지 및 전략물자 반출·입 절차의 신설 등을 포함한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였다.

특히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경분리원칙으로 남북경제협력 적극추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고, 4월에는 IMF체제 이후 침체되어 있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고, 6월에는 기계·장치·설비의 대북반출승인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대폭 축소(205개 → 178개)함으로써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역대상품목의 폭을 크게 넓혔다.

또한 1999년 8월에는 남북교역의 질서확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피해 구제, 식물검역 및 생산자 보호 등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대해 '승인요하는 품목'으로 조정하고, 위탁가공 원부자재 및 그 생산품의 반출입에 대해서는 거래형태가 임대 또는 무상인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출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99. 8. 16)

이어 10월에는 대북 투자 및 교역·위탁가공에 대한 기금지원을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시행하여 관련

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2000년 6월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채택·발포함으로써 다방면에 걸친 남북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는 한편, 민간차원의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2000년에는 남북간 교역액이 사상 최대의 규모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소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2002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경의·동해선이 연결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 남북교역제도 발전

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북한 핵문제의 대두로 한동안 정색되었던 남북관계는 1994년 10월 미북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과 관련국간의 관계개선 등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동 조치로 인해 기업인들의 방북이 허용되는 한편 남북간 협력사업(자) 승인 등이 구체화되는 등 남북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남북 경험 활성화 조치('94.11.8)〉

□ 조치내용

- ① 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인사 상호방문 허용
 - 시범사업 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 허용
 -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은 사안별로 허용
 - 민간차원에서 북한 경제인을 초청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및 우리 산업현장 견학 등의 사업 추진 허용
- ② 위탁가공 교역 활성화
 -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기술자 방북 허용
 - 생산설비 운용·기술지도·품질관리 요원 등
 - 수시방북 절차 간소화 등 편의지원 방안 강구
 -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시설재 반출 허용
 - 대규모 또는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설비 등의 반출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
 - 기타 소규모 설비는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으로 반출

※ 시설재 반출을 위한 관련규정 보완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③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용품 분야
 - 단기간내 경험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 분야
 - 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민간차원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허용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 추진」을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제시하고, 정경 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확대 추진을 천명하였다.

징경분리원칙 적용은 첫째, 남북간 정치문제와 경험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고 둘째, 민간주도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험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셋째, 정부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진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1998년 4월 30일 「남북경험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 경험 활성화 조치('98.4.30)〉

□ 기본방향

- 경험주체인 기업의 자율적 판단 존중, 민간주도의 경험 추진
- 정부는 경험진서 유지를 위한 과당경쟁 및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 경험추진 여건 조성에 노력

□ 조치내용

① 접촉·방북

- 방북요건(초청장 등) 구비시, 승인을 원칙
 - 방북을 제한해 온 대기업총수 및 경제단체장도 허용
-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 협력사업자 승인시 적용 → 기업인 방북에 일반적으로 적용
-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연장(1년 → 3년)
- 승인처리기간 단축
 - 접촉 : 현행 20일 → 15일
 - 방북 : 현행 30일 → 20일

② 교역

-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승인품목」의 지속적 확대
-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국내유휴설비의 무상반출, 임대 허용
 - 1회 승인한도(현행 100만불)의 기준 폐지

(3) 협력사업

- 투자규모제한 완전 폐지
 - 현행 500~1,000만불 규모
-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화
 -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
 - ▷ 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공전자공학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사업
 -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관련 사업
 - 기타 북한의 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 제도 도입
 - 300만불 이하의 협력사업
 -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
 -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

나. 남북경협 4개 합의서 서명

남북은 2000년 12월 16일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의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장장치 마련을 위해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정식 서명을 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경협 4개 합의서 〉

① 투자보장 합의서

- 남과 북은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허가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되, 그 투자자 및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도록 함.
-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한 수용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 남과 북의 일방과 그 상대방 투자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함.

②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안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은 기업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일방의 기업이 자동차·열차·배·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통하여 얻은 이윤에 대하여는 그 일방이 과세하되,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은 세액의 50%를 감면하여 그 상대방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이자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에서 과세할 수 있되, 동 소득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그 소득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일방의 거주자와 기업은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와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인 및 위원 4인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동 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상사분쟁사건과 「투자보장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상사분쟁사건을 관할토록 함.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인으로 구성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작성한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그 2명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하도록 함.

④ 청산결제 합의서

-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하는 용역거래의 대금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 남과 북은 각각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할 후 상대방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하도록 하되, 결제통화는 원칙적으로 미달러화로 하도록 함.
- 청산결제 이외의 대금결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다. 남북교역 여건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1995년 들어와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는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남북교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남북교역물품및반출·반입 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였다.

즉 대외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자유화의 확대 등 대외무역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남북교역이 국내시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교역 품목을 재조정하는 한편, 무상 반출입의 경우에는 교역품목의 구분과 관계없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 품목 구분을 그대로 남북교역 품목 구분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동 고시의 개정으로 남북교역 고유의 교역대상품목 구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교역의 독자성이 제고되었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개정('95.1.3)〉

- 북한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반입을 허용한 경우 수입자유화 등 대외시장 개방과 맞물려 국내시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225개 품목을 반입제한 승인품목으로 구분·관리
- 남북교역 품목을 국제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 자동승인품목이라도 무상 반출입의 경우에는 제한승인품목으로 분류,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또한 정부는 「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라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계·장치 등 생산설비의 대북 반출시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199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98.6.19)〉

- ① 기계·장치·설비의 경우 "1회 100만불 이상 또는 연간 미화 300만불 이상 반출"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 ②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그 협력사업의 결과로 생산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한 물품은 사업승인의 범위내에서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으로 구분하여 개별적 승인없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함.
- ③ 별표1의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205개에서 178개로 축소함
- ④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등 개별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도서, 음반, 비디오필름 등을 '남북교역대상물품'으로 명시하여 반입승인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특히 정부는 북한물품의 부정 반입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교역질서 확립과 국내 산업피해 구제, 방역 및 생산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일부품목에 대해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분류하고, 거래형태(무상)로 인해 반출입승인을 요하게 되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그 생산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99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99.8.16)〉

①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조정

- 산업피해 구제, 식물검역 및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반입제한이 필요한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승인대상품목으로 분류
 - 포켓용ライター(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 및 없는 것)
 - 빗질
 - 꽃게(산것·신선 또는 냉장 및 냉동)
- 북한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민어'는 반입승인대상품목에서 삭제
 - ※ 별표 1의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수는 178개에서 182개로 늘어남.

② 반출입 절차 간소화

- 무상반출입 등 거래형태로 인해 반출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그 생산품에 대해서는 승인절차 없이도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③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북한 물품반입승인신청서' 등 4종의 서식을 제정

④ 용어 및 조문 정리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대해 새로이 구분 정리

또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 피해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 반입승인대상물품으로 분류코자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개정(2000.9.28)〉

o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조정

- 국내산업피해 구제조치(긴급관세 30% → 315%)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냉동마늘 등에 대하여 반입승인대상물품으로 분류
 - 냉동마늘(0710.80.2000)
 - 초산조제마늘(2001.90.9060)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부 고시)의 개정에 따라 반입승인대상물품중 일부를 개정
 - 마늘(0703.20.0000) → 탈피한 것(0703.20.1000)
기 타(0703.20.9000)

※ 별표 1의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수는 182개에서 185개로 됨.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 및 교역증대 등으로 인한 교류협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역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또한 그동안 교역과 관련한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되어온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 개정 (2001.10.31)〉

① 북한방문 유효기간의 연장

- 현행 1년 6개월 이내의 북한 방문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

② 수시방북 절차의 간소화

- 수시방문증명서의 경우 매 귀환시마다 증명서를 반납하던 것을 유효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반납

③ 방북안내교육 및 결과보고서 제출 법적 근거 마련

- 남북교역 질서 확립 등을 위한 방북 안내교육 및 접촉·방북 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④ 주민집축 유효기간 연장제도 마련

- 북한주민집축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또한 3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가능

한편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01.12.31)을 통해 반입물량의 급증으로 인한 국내 수급불안정 문제의 해소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을 제한하고, 시장접근물량 증대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를 운용중인 품목 등에 대해서는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에서 삭제하는 등 반출입 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2001.12.31)〉

o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신설

- 수산물 : 냉동 게(붉은대게, 대게압컷 및 두홍잡장 9cm 이하에 한함), 신선·냉장 게(붉은대게, 대게압컷 및 두홍잡장 9cm이하에 한함)
- 농산물 : 들깨, 인삼분(백삼), 인삼정(백삼), 기타전과 땅콩의 씨류(조제저장처리), 고추장, 혼합조미료, 혼합조미·조제품기타, 인삼류(기타백삼제품류)
- 컴퓨터

또한 정부는 2002.10.24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을 통해 제3국산 물품의 북한산으로의 위장반입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간 교역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

하였으며, 아울러 북한물품의 국내 반입시 「신고」 물품의 반입승인 등 현실성이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개정하여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자 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2002.10.24)〉

①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에서 제외

- 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의 「신고」 대상물품을 포괄승인 품목으로 변경

②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조정

- 교류협력법시행령 제 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공산품. 다만, 고시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II. 남북교역 및 수송 현황

1. 단순물자교역

가. 추진현황

한반도 전쟁이후 단절되었던 남북한간 공식적인 물자교류는 1988년 「7·7선언」 후속조치로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한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규모는 미미하였지만 1989년에는 1천9백만달러, 이듬해인 1990년에는 1천3백만달러의 교역량을 달성하면서 남북한간 공식적인 물자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남북한간 공식적인 물자교류가 본격화되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1991년에는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섰으며 1992년에는 1억7천만달러를 상회하는 등 그 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단순 물자교역 형태를 벗어나 보다 더 발전된 위탁가공교역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1993년과 1994년도에도 남북간 물자교역은 꾸준히 진행되어 교역량이 2억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며, 위탁가공교역도 2천5백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남북간 경험은 그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94년 11월 정부가 남북간의 시범적 경험과 기술자 방북 등을 포함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간의 교역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1995년에는 2억9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6년에는 교역규모가 2억5천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7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철강금속류의 반입 증가와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의 진전 등에 힘입어 교역량이 3억8백만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22.3% 증가함으로써 남북교역사상 최초로 3억달러를 돌파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1998년 우리나라가 IMF체제에 접어들면서 남북간 교역도 큰 영향을 받게되었는 바, 금강산 관광사업 및 무상지원 물품의 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역액이 2억2천만달러에 머무는 등 교역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1999년 남북교역액은 농수산물 반출입, 위탁가공교역 및 비거래성 물자반출 증가에 따라 3억3천만달러로 급상승하였다.

특히 2000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남북교역액도 사상 최고치인 4억3천만달러에 이르게 되었으나, 2001년도는 남북간 교역이 조정기를 갖는 시기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4억 2백만달러에 이르렀다.

남북교역이 이러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2002년도에는 경의·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특구지정, 금강산 특구 지정 등의 영향으로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서 교역액도 10월 현재 4억4천만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1989년이래 2002년 10월말까지의 교역실적은 통관기준으로 총 33억7천만달러이며, 이중 반입이 19억7천만달러, 반출이 13억9천만달러이다.

남북교역 현황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 수	품목수	금 액	건 수	품목수	금 액	건 수	품목수	금 액
'89	66	25	18,655	1	1	69	67	26	18,724
'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91	300	44	105,719	23	17	5,547	323	61	111,266
'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1	186,592
'94	827	73	176,298	495	92	18,249	1,322	159	194,547
'95	1,124	105	222,855	2,720	174	64,436	3,844	265	287,291
'96	1,648	122	182,400	2,980	171	69,639	4,628	280	252,039
'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385	308,339
'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810	486	221,943
'99	3,089	172	121,604	3,421	398	211,832	6,510	525	333,437
'00	3,952	202	152,373	3,442	504	272,775	7,394	646	425,148
'01년	4,720	200	176,170	3,034	490	226,787	7,754	545	402,957
'02년									
1~10월	3,987	180	179,948	3,026	468	261,067	7,013	532	441,016
총 계	24,672	1,577	1,974,665	24,337	3,046	1,395,525	49,009	3,907	3,370,190

* 주 : '95년 교역실적에는 대북 쌀 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나. 교역형태 · 품목

(1) 교역형태

남북한간 교역은 북한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북간 교역액이 증가하면서 농수산물 및 위탁가공 교역의 일부품목에 대해 북한측과 직접 협의하고 계약하는 직접교역 방식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반입과 반출의 비율은 초기에는 10 : 1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6년에는 3 : 1, 1997년에는 1.7 : 1로 반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1998년에는 1 : 1.4, 1999년에는 1 : 1.7, 2000년에는 1 : 1.8, 2001

년에는 1:1.2의 비율로 최근 반출이 반입을 초과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KEDO가 지원하는 중유, 금강산 관광사업물자, 경수로사업물자, 무상지원물자, 기타 임가공 및 협력사업용 물자 등의 반출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2) 반입품목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후 초기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금괴, 아연괴 등 철강 금속류를 비롯하여 광산물 등 주로 1차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1994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철강 금속과 광산물의 반입 비중이 줄어들고 위탁가공제품인 섬유류의 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2차 상품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 형태로 품목구조가 바뀌게 되었다.

2002년도 10월까지 반입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42.4%, 섬유류 37.3%, 철강금속류 8.2%, 전자 및 전기 4.3%, 광산물 4.7%, 생활용품 1.5%, 기계류 0.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 반입현황

(단위 : 천달러, %)

품 목	'00(A)		'01(B)		2002년 1월-10월		증감율 (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농림수산물	71,934	47.2	89,811	51.0	76,244	42.4	24
광 산 물	517	0.3	3,554	2.0	8,490	4.7	587.4
화학공업생산품	1,538	1.0	1,405	0.8	314	0.2	-8.6
섬 유 류	53,693	35.2	54,930	31.2	67,182	37.3	2.3
철강·금속제품	11,747	7.7	9,887	5.6	14,669	8.2	-15.8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1,739	1.1	2,281	1.3	1,486	0.8	31.1
전자 및 전기	8,251	5.4	8,748	5.0	7,761	4.3	6.0
기타제품	2,940	1.9	5,554	3.2	3,802	2.1	88.9
기타(코드 불확실)	9	-	9	-	-	-	-
계	152,373	100.0	176,170	100.0	179,948	100.0	15.6

(3) 반출품목

북한으로의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최대품목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1993년부터는 위탁가공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섬유류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품목 구조가 크게 바뀌었으며, 1997년 이후에는 KEDO 중유반출, 북한 원전건설용 물자,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 무상지원물자의 반출증가로 농산물, 건설용 자재·장비 등의 반출이 증가되고 있다.

2002년 10월말 현재 반출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화학공업제품 32.1%, 농림수산물 20.2%, 섬유류 19.5%, 기계류 8.3%, 철강·금속제품 8.1%, 전자 및 전기 6.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5%로 전년에 비해 농수임산물이 다소 증가한 가운데 여타 품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 반출현황

(단위: 천달러, %)

품 목	'00년(A)		'01년(B)		2002년1월-10월		증감율 (A / 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일차산품	25,896	9.5	33,189	14.6	52,754	20.2	28.2
화학공업제품	95,528	35.0	63,846	28.2	83,884	32.1	-33.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4,752	1.7	3,686	1.6	3,937	1.5	-22.8
비금속 광물제품	20,497	7.5	11,176	4.9	3,464	1.3	-45.5
섬 유 류	43,433	15.9	52,388	23.1	50,917	19.5	20.6
생활용품	5,414	2.0	2,604	1.1	4,522	1.7	-51.9
철강·금속제품	13,995	5.1	16,703	7.4	21,103	8.1	19.3
전자 및 전기	28,075	10.3	14,560	6.4	17,319	6.6	-48.1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32,122	11.8	27,155	12.0	21,593	8.3	-15.5
잡 재 품	3,042	1.1	1,480	0.7	1,537	0.6	-51.3
기타(코드 불확실)	21	-	-	-	-	-	
계	272,775	100.0	226,787	100.0	206,693	100.0	-16.9

2. 위탁가공교역 현황

위탁가공교역은 우리의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완제품을 다시 반입하는 교역방식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가방을 간접교역방식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1992년 838천달러, 1993년 7,008천달러, 1994년 25,663천달러, 1995년 45,892천달러, 1996년 74,402천달러, 1997년 79,069천달러로 점차 증대되어 왔다.

다만 1998년 위탁가공 교역액(70,988천달러)은 IMF상황하의 국내 경기위축으로 전년도에 비해 10%정도 감소하였으나,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1997년도의 26%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특히 국내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1999년은 처음으로 1억달러를 넘었으며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129,190천달러로 증가하는 등 그 증가 추세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2001년에는 124,924천달러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가운데 2002년도에는 의류분야 임가공 증가에 힘입어 10월 현재 138,605천달러로 예년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위탁가공교역은 북한의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북한측에서도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투자부담 없이 외화획득이 가능하고, 낙후된 경공업분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북한간 임금수준 차이 등 상이한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상호보완성이 높은 위탁가공 분야는 섬유류, 전자부품 조립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칼라TV, 전화기, 자동차배선, 컴퓨터 모니터, 카세트이프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위탁가공구역 현황

(단위 : 천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합	계
	총금액	위탁가공	총금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1989	18,655	-	69	-	18,724	-
1990	12,278	-	1,188	-	13,466	-
1991	105,719	-	5,547	-	111,266	-
19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9
19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19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19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19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19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19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1999	121,604	53,736	211,832	45,883	333,437	99,620
2000	152,373	71,996	272,775	57,224	425,148	129,190
2001	176,170	72,579	226,787	52,345	402,957	124,924
2002 1월-10월	179,948	80,804	261,067	57,801	441,016	138,605
계	1,974,665	438,706	1,395,525	357,493	3,370,190	796,199

3. 수송장비 운행 현황

가. 개 황

남북한간 물자수송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1991년 남북한간에 체결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다. 동 부속합의서 제3조 제5항에서는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공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후속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남북한간에는 공식

적인 수송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남북관계 사정에 따라 1988년 대북경제개방조치 이후 1993년말까지 남북한간에 이루어진 5억불 상당의 교역물자 수송은 모두 외국선박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남북간의 항로에 내국선사의 참여기반을 조성하여 남북교류 협력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족내부의 항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4년 6월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남북한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외국인 모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아직까지는 제3국적선에 의한 수송이 대부분이나 1995년 쌀 15만톤 대북지원, 1997년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물품과 경수로 물자,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 2001-2002년 비료 지원물자, 2002년 대북식량차관 등을 우리 국적선이 운송한 사례와 같이 남북간 해운분야의 상호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더욱이 2002년 11월 제1차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북간 해운합의서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접근을 이룸으로써 향후 남북간 해상운송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남북간 화물 운송은 해로 운송에 진적으로 의존해 왔으나,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연결될 경우 남북간 물류는 육로 운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간 교역 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남북간 선박운항

(1) 운항 현황

현재 남북간 선박운항은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구분 운행되고 있다. 정기선은 인천-남포간에 국양해운(주)의 트레이드 포춘호 주당 1회, 부산-나진간에 동룡해운(주)의 추싱호 월 3회, 금강산관광을 위해 속초-장전간에 현대아산(주)의 설봉호 3-4일에 1회, 경수로 인력수송을 위해 속초-양화간에 대아고속해운(주)의 한겨레호 주당 1회 등 총 4개 항로가 운행되고 있다. 이외 부정기선은 국내 교역업체 등이 필요에 따라 중국 등 제3국적선을 용선하여 운행하고 있다.

(2) 운항횟수

남북간 수송장비운행 승인제도가 시행된 1994년 7월에서 2002년 9월까지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은 편도기준으로 8,245회이다. 이중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행이 4,750회,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행이 3,495회이다. 남한지역에서는 인천항, 부산항, 북한지역에서는 남포항, 나진항으로 선박운행이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 수산물 등의 수송을 위해 남한지역은 묵호, 동해, 군산, 북한지역은 해주, 청진, 신의주, 홍남, 원산 등 지로의 선박운행도 증가하고 있다.

남북간 선박운행 현황

(단위: 횟수)

구 분	1994. 7-1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9월	계
남→북	27	99	101	113	260	731	916	766	482	3,495
북→남	70	208	221	244	342	983	1,157	920	605	4,750
계	97	307	322	357	602	1,714	2,073	1,686	1,087	8,245

(3) 물동량

1994년 7월부터 2002년 9월까지 남북간의 물동량은 5,278천톤으로
 서 이중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동량은 1,769천톤이며 남한에서 북한으
 로의 물동량은 3,509천톤이다. 1997년 이전까지는 북한 → 남한 물동량
 이 남한 → 북한 물동량보다 많았으나, 경수로공사물자, 금강산 관광사업
 물자, 무상지원물자 등의 증가로 인해 남한 → 북한 물동량의 증가가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항구별로는 남한지역은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목포항, 북한지역은
 나진항,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에서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남북간 물동량 현황

(단위: 톤)

구분	1994. 7~1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9월	계
남→북	6,758	281,220	147,888	361,282	306,111	780,503	547,332	508,321	300,049	3,509,481
북→남	131,136	345,778	187,610	249,739	162,220	203,019	155,883	239,332	93,808	1,768,635
계	137,894	626,998	335,498	611,041	558,331	983,612	703,145	837,653	483,947	5,278,119

Ⅲ. 남북교역 절차

1.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가. 북한주민접촉

(1) 접촉의 개념

남한의 주민이 북한과 어떠한 형태로든 교역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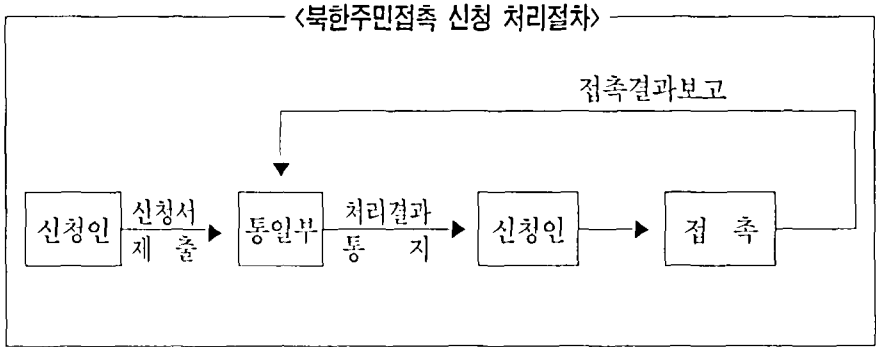
동 법에서 말하는 남한의 주민은 대한민국에 적을 둔 주민(법인·단체 포함)을 의미하며, 북한의 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적을 둔 주민 뿐만 아니라 조총련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을 의미한다.

또한 접촉의 기본적인 개념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의사교환의 방법·수단·장소 등을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 상호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된다.

특히 북한주민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중국 등 제 3국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접촉의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Telex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된다.

(2) 북한주민접촉 신청



(가) 신청방법 및 처리

북한과의 교역을 위해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접촉 예정 15일 전까지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주민접촉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류 접수는 우편신청이나 대리신청도 무방하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북한주민접촉 신청·처리는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5일내에 처리되며, 그 처리결과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문서에는 접촉신청이 승인된 경우 접촉신청인, 피접촉인, 접촉목적, 승인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며, 불허의 경우에도 불허사유가 기재된다.

신청서 처리기간은 보통 15일 가량이 소요되므로,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한다.

〈신 청 서 류〉

- ① 북한주민접촉신청서 1부
- ② 신원진술서 1부
- ③ 회사소개서 1부
- ④ 대북사업계획서 1부
- ⑤ 북한회사 소개서 1부
- ⑥ 중개상사 소개서 1부
- ⑦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서 사본 1부
-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신청서류 작성

북한주민접촉 신청서의 경우 신청인 인적사항에는 신청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되며, 피접촉예정인 인적사항에는 신청자가 접촉하고자 하는 북한주민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된다. 다만 북한주민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중국 등 대리인을 접촉하는 관계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북측의 회사명 정도만 기록해도 무관하다.

또한 1개 회사에서 2인 이상 동시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를 대표하여 1인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나머지는 신원진술서만 첨부하면 된다.

신원진술서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사항을 양식에 있는 작성항목에 따라 직접 기재하고 우측 상단에 신청인 사진을 부착하면 된다.

회사소개서는 북한과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국내 회사에 대한 기초사항을 파악하여 그 회사가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정 양식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대북 사업계획서는 신청회사가 북한과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추진 경위, 사업분야 및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기타 북한회사 및 중개상사 소개서는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며, 무역역고유번호 부여서는 무역협회에서 발급받은 후 그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 접촉결과 보고

동일부장관으로부터 접촉승인을 받아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에는 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동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고해야 한다.

접촉결과 보고는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는 접촉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정부와 협의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접촉결과보고는 특정양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승인문서와 함께 우송되는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 양식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라) 승인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은 최장 3년의 범위내에서 사안에 따라 신축성 있게 결정된다. 승인 유효기간중에는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내에 서는 횟수에 제한없이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기간 내에 소정의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북한측과 협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승인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접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류와 절차는 최초 신청때와 동일하다. 다만, 신청서류중 신원진술서와 같이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간의 북한주민과 접촉한 내용 등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자료는 추가해야 한다. 또한, 비록 승인유효기간 내의 접촉이라 한지라도 당초 승인받은 접촉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역시 별도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후 신고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부득이 승인을 얻지 못하고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 5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접촉후 7일 이내에 접촉사실을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 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사후신고 서식으로는 소정양식인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접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남북한 왕래

(1) 남북한 왕래의 개념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남북교류 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2항에 의해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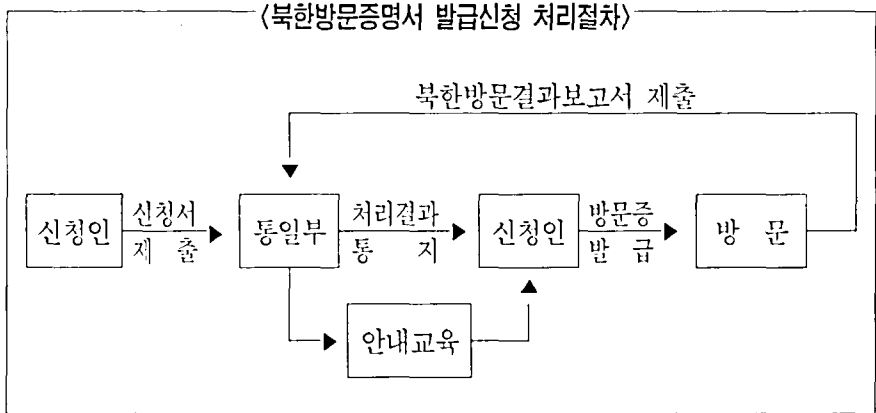
여기서 남북한 왕래란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한다. 판문점을 통해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는 대신 재외공관에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조총

련」인사와 같이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 동포가 남한을 방문할 때는 『남한방문증명서』 대신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방문하여야 한다.

(2) 북한방문 절차



(가) 신청방법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우편신청이나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대리신청서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20일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

야 한다.

북한방문이 승인된 경우는 증명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방문목적, 방문기간, 신장, 방문증 발급일자 그리고 방문자 사진이 부착된 북한방문증명서가 발급된다.

발급된 북한방문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경우는 본인의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북한방문을 신청한 자에게는 재외공관을 통해 북한방문증명서가 전달된다.

북한방문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사유가 명시된 문서가 신청인에게 우송된다.

〈신 청 서 류〉

- ①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1부
- ② 신원진술서 1부
- ③ 방북계획서 1부
- ④ 초청장 1부
 -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북측에서 발급한 서류
- ⑤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
 - 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cm · 세로 4.5cm
- ⑥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 해당자에 한함

(나) 신청서류 작성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경우 신청인 인적사항, 방문대상자 인적사항, 방문목적, 방문 예정일징, 방문 및 귀환 예정경로 등을 기재하며, 우측상단에 신청인 사진을 부착하면 되며, 신원진술서는 북한주민접촉시 제출하는 것과 동일하다.

방북계획서는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방북목적, 접촉인사, 추진사업 내용, 일정별 협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또한 초청장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것으로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청장은 북한기관에서 발급되며, 초청목적, 초청기간, 피초청인,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장, 초청인(기관)의 서명·날인, 발급일자 등으로 구성된다.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는 군미필자(허가서)의 경우 해당지역 병무청에서, 군필자(신고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이다.

(다) 방문기간

방문기간은 방문목적과 북한측의 초청내용에 따라 적정기간이 부여된다. 방문기간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방문기간 연장은 소정의 방문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최초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시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를 제출한 방문자는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연장한 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 북한을 방문한 필요가 있다면 북한방문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최초 신청때와 같다.

다만, 신청서류중 신원진술서와 같이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동안의 방문활동을 설명하는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수시방북제도〉

1998년 4월 30일 「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 따라 1회 승인으로 1년 6개월의 범위내에서 수시방북 적용대상이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은 기업」에서 「모든 기업인」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수시방북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시방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 북한방문 안내교육

북한을 방문하고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방문전에 북한방문 안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내교육은 북한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북한방문자의 원활한 방문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내용은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방문시 행동요령, 기타 방문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마) 출입심사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는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 공무원에게 소장의 출

입신고서와 왕래주민휴대물품신고서를 제출하고 출입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심사에서는 신원확인, 휴대물품 등의 검사, 검역, 북한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이 이루어진다.

특히 휴대물품은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통일부고시)」에 따라 반입·반출이 금지되는 물품과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편의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에 소개되어 있다.

(바) 북한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

북한방문증명서가 분실되었거나 사용이 어려운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기타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북한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소정양식인 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서와 증명서 재발급용 사진 1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북한방문증명서 반납

북한방문증명서는 방문을 마치고 귀환할 때 반납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귀환할 경우는 출입장소(판문점 등)에서 반납해야 하며, 제3국을 통해 귀환할 경우에는 귀환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수시방북승인을 받은 자는 매 귀환시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며 방북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7일 이내에 반납하면 된다. 또한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반납할 수도 있다.

(아) 북한방문 결과보고

북한방문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북한방문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된 보고서식은 없으며 신청인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3) 남한방문 절차

남한방문절차는 원칙적으로 남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북한주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주민을 초청하는 남한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제반절차를 밟게 되므로 북한주민 초청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신청서류 외에는 기본적으로 북한방문절차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신청서류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신 청 서 류〉

- ①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5부
- ②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cm·세로 4.5cm) 4매
- ③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④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⑤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남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법령에 의한 소정양식으로 남한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작성한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징하는 서류 또는 자료는 북한주민초청과 관련된 행사계획서, 초청경위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 등이다. 나머지 서류는 대리신청서 대리 신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4) 남북한 왕래의 형태

남북한 왕래의 형태는 왕래경로에 따라 판문점 등을 통한 왕래와 제3국을 통한 왕래로 나눌 수 있으며, 판문점과 제3국을 통한 왕래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판문점을 통해서 상대지역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로서, 왕래절차에 대한 남북한 당국간의 협의가 있는 후 가능하게 된다. 과거 남북당국간 회담, 남북간 전통음악 교환공연을 위한 왕래가 이에 해당된다.

제3국을 통한 남북한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경우로서, 경유지로는 보통 중국(북경)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북한입국에 따른 별도의 수속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UNDP회의에 참가하는 남·북한 참석자들이 중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한 바 있다.

판문점과 제3국을 경유한 남북한 왕래는 판문점을 통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후 방문지에서 제3국을 통해 귀환하는 경우와 제3국을 통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경우이다.

1991년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의 남한선수들은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온 북한선수들과 함께 「서울결단식」을 갖고 포르투갈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곧장 입북하여 「평양해단식」을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바 있다.

(5)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가) 재외국민의 범위

법 제9조제2항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북한방문은 사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얻은 자를 의미한다.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허가 요건은 체류국의 관련제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재외국민의 자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국가에 따라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으며 장기체류허가의 요건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해서도 재외국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방북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나)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절차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방문하기 5일전 또는 귀환후 10일이내에 재외공관에 북한방문신고서,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남북교역

가. 남북교역의 개념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하며,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도 포함)을 말한다.

따라서 제3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입)에 해당되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대외무역(수입)에 해당된다.

남북교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절차와 구분되는 반출·입절차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관세의 면제는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며 반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3국산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의미의 남북교역에는 단순한 반출·입 외에도 연계교역, 임가공교역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연계교역’이라 함은 반출과 반입이 연계된 교역을 말하며,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교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등을 포함한다.

‘임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과, 가공임을 가득하기 위하여 북한으로부터 가공

할 원부자재를 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출하는 '수탁가공교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중 위탁가공교역은 최근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교역방식이라 할 수 있다.

나. 남북교역의 당사자

남북교역(북한과 제3국간 물품의 중계무역 포함)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무역업고유번호가 부여된 업체(관계자)가 추진할 수 있으며,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면 남북교역을 할 수 있으나, 유통질서확립 또는 보건·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국내법체계에서 특수한 자격을 요구하는 품목을 교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품목의 취급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특수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예〉

- 먹는샘물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 식품류 : 수입식품판매업 신고
- 주류 : 주류수입(중개업) 면허 소지
- 북한도서 및 정기간행물 : 문화관광부 허가 및 등록
- 삼산화 비소(Arsenic trioxide) : 독극물 수출입업 등록
- 한약재 : 의약품 수입자 확인증 소지

다. 남북교역 대상물품의 구분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으로 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분류목록표에 의한다.

남북간 교역물품은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 의하여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과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으로 구분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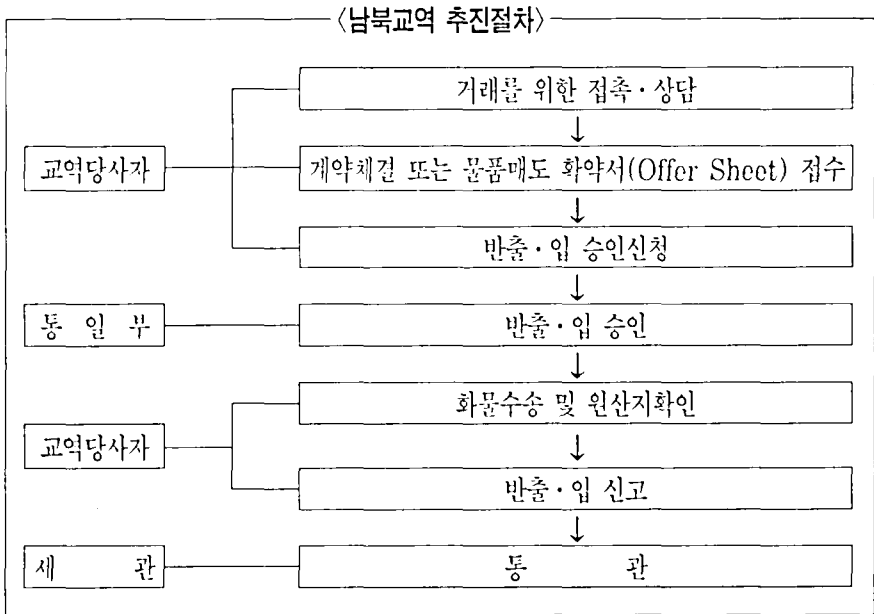
- ①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품목
- ② 반입물품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 포함), 음반,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동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비디오물을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 ③ 반입물품으로서 남북물품반출입고시 별표1에 계기한 186개 품목
- ④ 반입물품으로서 컴퓨터
- 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 물품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공산품, 다만,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 ⑥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 ⑦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2)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 ①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 ②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사업승인의 범위내에서 동일부장관에게 신고한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③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보통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 ⑤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 ⑥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라. 남북교역 추진절차



(1) 접촉 및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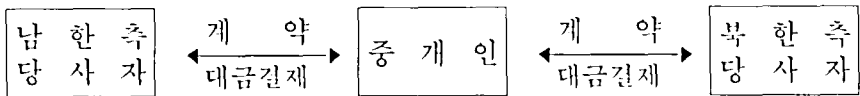
남북교역을 위한 북한측 교역 당사자와의 접촉 및 상담은 거래 초기에는 대부분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콩·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제3국의 무역상·해외동포·한국상사의 제3국 현지법인 등이 중개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교역이 진행된 경우에는 중개인을 통한 접촉·상담경험과 거래과정을 통해 조성된 상호신뢰를 토대로 북한측 교역당사자와 직접 접촉·상담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직접 접촉·상담은 주로 중국 등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계약

남북교역 당사자간의 계약형태 등에 따라 남북교역은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된다.

간접교역은 남한의 교역 당사자와 북한의 교역 당사자 사이에 중개인을 매개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형태로서, 현재 전체 남북교역의 약 90% 이상이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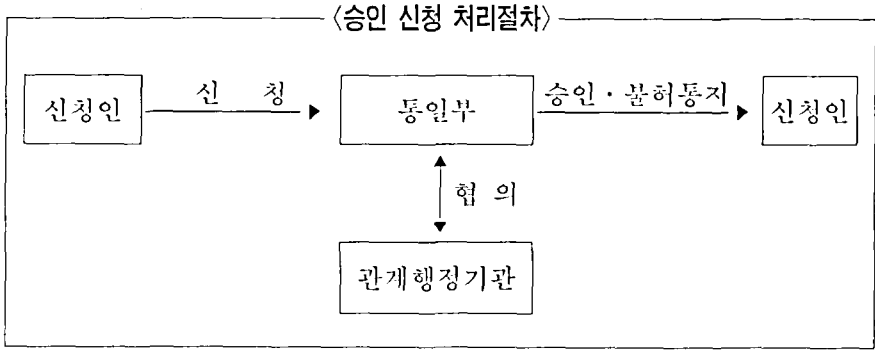


직접교역은 남북한의 교역 당사자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되는 형태로서, 현재로서는 교역 분쟁발생시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직접교역을 바람직한 남북교역의 형태로 보아 이를 권장하고 있는 만큼, 승인여부 검토나 통관시 원산지 확인 등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다.

간접교역은 북한측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중개인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전한 교역형태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중개인의 보전능력 등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장치가 마련되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3) 반입·반출 승인(승인을 요하는 품목)



(가) 반입승인

북한물품을 반입할 경우 반입물품이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 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 의거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중 금액의 변경(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이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금결제방법, 승인유효기간연장, 승인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한편,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반입신청 접수시 통일부에서는 당해 품목의 과다공급에 따른 국내시장 교란 가능성, 국내 생산자 보호 측면에 대한 고려, 반입가격의 적정성, 남북교역의 안정적인 확대·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기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반입품목 결정시 이들 기준 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반입 승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 청 서 류〉

- ① 북한물품 반입승인신청서(소정양식) 5부
- ②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화약서(offer sheet) 1부(간접교역의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 ③ 반입대행 계약서 1부(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 ④ 특정물품취급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 ⑤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북한주민접촉승인서 사본 및 접촉결과보고서 각 1부 등
- ⑥ 제3국경유 사유서(포괄승인 품목을 제3국 경유하여 반입시)

(나) 반출승인

반출의 경우에도 반출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반출품목은 대부분 반출 포괄승인품목으로 되어 있어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출신고시 세관에 동 물품이 북한에 반출(제3국 단순경유 포함)되는 것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반출승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 청 서 류〉

- ① 반출승인신청서(소정양식) 5부
- ②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화약서(offer sheet) (간접교역의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 ③ 반출대행계약서 1부(공급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
- ④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북한물품반출관련내역서(소정양식), 북한주민접촉승인서 사본 및 접촉결과보고서 각 1부 등

(다) 반출입승인

반출, 반입이 연계되어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대응물품이 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때에는 반출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출입 혼합거래 형태로는 연계교역에 의한 반출입(물물교환, 구상교역, 대응구매)과 중계교역에 의한 반출입이 있다.

연계교역에 의한 반출입승인은 반출과 반입이 연계된 하나의 계약서로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가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례를 보면 가장 단순한 것으로서 남한 물품을 반출하고 그에 상응하여 북한의 물품을 반입하는 형태의 물물교환이 있으며, 일부 위탁가공구역도 반출입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반출입승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 청 서 류〉

- ① 반출입승인신청서 5부
- ② 반출 · 반입계약서 1부(하나의 계약서)
 -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 추가
- ③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
- ④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반입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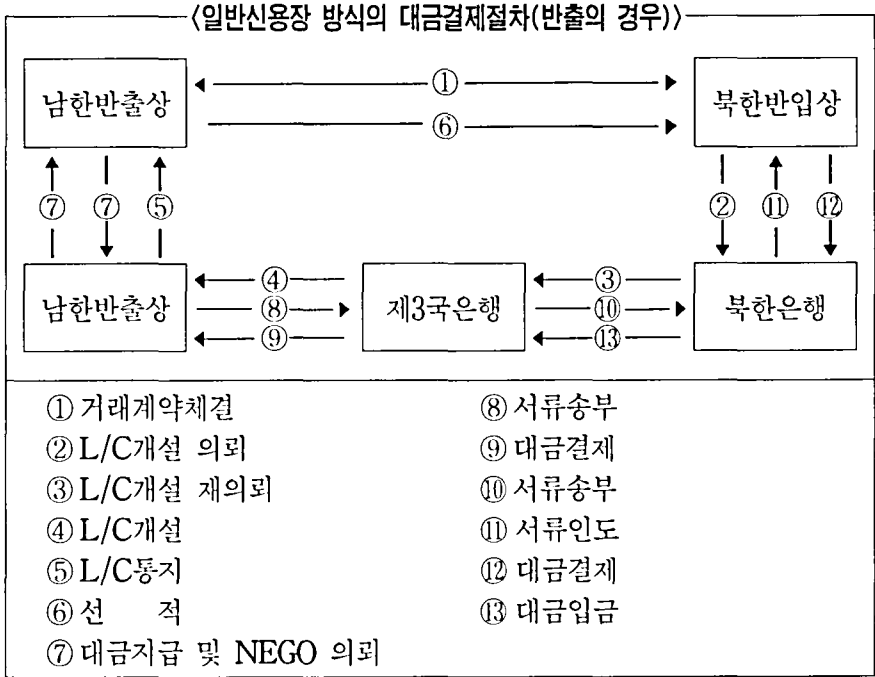
(4) 대금결제

남북간에는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제8항에서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속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북교역에 있어서의 대금결제는 일반 수출입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외국환거래법이 허용하고 있는 결제방법과 결제통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남북교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금결제 방법은 일반 신용장(L/C) 방식이며, 물물교환(Barter Trade)이나 송금환(T/T) 등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금결제 방법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 및 영수 방법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교역품목이 포괄승인품목 일지라도 대금결제방법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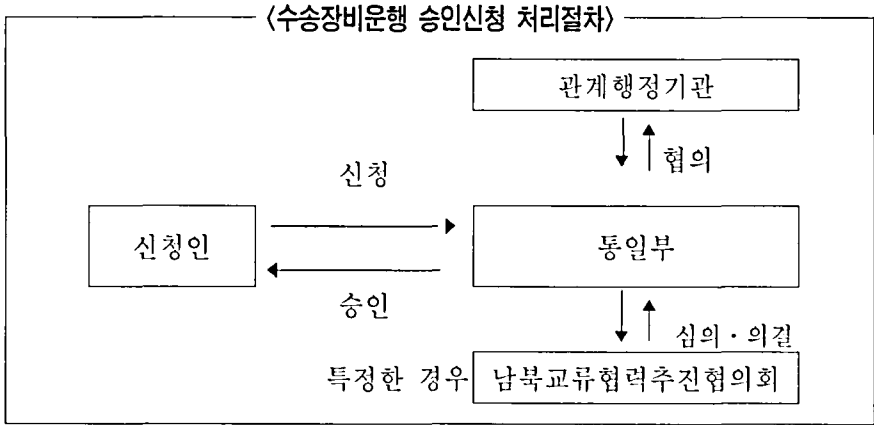


(5) 수송

남북간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조 제5항에서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러한 합의사항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남북간 물자의 수송은 제3국적선의 해운 운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는 4개의 정기선과 교역업체 등이 필요에 따라 운행하는 부정기선이 있다. 이들 선박은 대부분 제3국을 경유하여 운항하나 공해상을 통해 남북간을 직운항하는 경우도 있다.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및 영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과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에 의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한주민(법인포함)은 물론 외국인(법인포함)도 남북한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국적불문)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인대상이 되고, 제3국 항구를 경유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이며, 수송장비운행 승인신청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 청 서 류)

- ①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소정양식) 1부
- ② 운행계획서(운행경위 포함) 1부
 - 운행경위에는 운행일자, 운송경로, 수송화물내역, 화주 등의 내용 기재
- ③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재원내역서 1부
 - 사용할 수송장비 미확보시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재원과 확보 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
 - 선박의 경우는 선박국적증서 사본
- ④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남북간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선박의 경우, 북한 → 남한간 부정기운항의 경우에는 불필요
- ⑤ 소정의 운행안전교육 이수 증빙서류 각 1부
 - 수송장비 운행요원 중 남한주민이 있을 경우 : 방북승인과 소정 교육을 받고 이수필증도 제출
- ⑥ 대리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대리신청의 경우)
- ⑦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남북교역물품 통관절차는 대부분 일반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를 준용하여 처리되고 있으나(양식도 일반수출입신고서 사용),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중 북한산 물품에 대해 관세를 비과세함에 따라 원산지 확인절차가 부수되는 점이 일반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와 다르다.

(가) 반입물품통관

북한에서 반입한 물품의 반입통관 절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준용하므로,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관세청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 북한산 물품의 경우 관세가 비과세 처리됨에 따라 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전량검사 후 면허처리하고 있다.

북한에서 직반입한 물품의 반입신고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 사용)
- 반입승인서(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
- 가격신고서(invoice, 보험증서 포함)
- 선하증권사본
- 최근 2개월간의 선장확인 선박항해일지
- 원산지증명서
- 기타 검역물품인 경우 당해 검역증(식품인 경우 식품검사 합격증) 및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아울러 제3국을 단순경유한 물품의 경우에는 직반입한 경우의 제출서류에서 선하증권 사본, 선박항해일지를 아래와 같은 서류로 바뀌서 제출하면 된다.

-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까지의 선하증권 일체
- 제3국의 세관 등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단순경유증명서

(나)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원산지 증명서의 개념〉

원산지증명서란 당해 물품이 당해국 물품(원산지증명서)이거나
통과물품(재수출원산지 증명서) 또는 당해국에서는 가공만 거쳤음
을 증명(가공원산지증명서, processing C/O)하기 위하여 당해국
의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 등 권한있는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수출물품이 당해국산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라 하지 않고 「산지증명서」라고 부른다.

□ 원산지증명서의 수록내용 및 인정기준

원산지증명서는 발송인, 수화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수단, 산지, 수출대상국 등이 기재된 것이어
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산지증명서」 등의 발송인, 수화인 등은 수입승
인서(또는 반입승인서)상의 송화인과 일치해야 하고 당해 물품의 수
량·중량도 수입승인서(반입승인서)상의 수량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유규명을 위한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한 후 통
관해야 한다.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라 함은 국제관행상 작
성방식(일정양식 사용, 타자 등으로 작성)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
다는 의미이며,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 관행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
고 있어 간혹 원산지증명서를 손으로 작성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국
제협약에 맞지 않으므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 사용언어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발급기관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또는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조선무역은행의 경우는 남한의 한국은행과 같은 조선중앙은행 산하의 은행으로서 은과, 금과 등 귀금속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산하의 원산, 홍남, 평양, 남포, 송림, 청진, 해주, 송악산 등 대외상품검사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예) 남포에서 발행한 경우(51-3-41) : 남포대외상품검사소번호-
검사원번호-발행일련번호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비과세 인정기준〉

북한과의 교역은 내국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시 관세를 비과세 처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모두 관세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관세 비과세 처리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산지가 북한임은 물론,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반입된 물품이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은 물품

북한산 물품이 관세 비과세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에 의거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과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으로 구분되어 있다.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은 통일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입될 수 있으며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은 개별적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다. 따라서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이외의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에 대해서는 동관시 남북교역 대상물품임을 신고하면 비과세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 대상 물품중 통상적인 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품의 견본 등을 반입할 때는 상기의 반입 승인서는 필요없고 북한산물품 반입사유서 및 그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면 비과세 통관도 가능하다.

□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관세 비과세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북한이어야 하며, 반입통관시 세관에 이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반입된 물품의 원산지확인 방법은 ① 북한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②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 ③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치 않아도 북한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남북교역물품통관 관리에관한고시 제14조)

- 과세가격(중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 우편물(관세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휴대품이나 별송품
-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운송되었거나 제3국을 단순경유하여 반입된 물품

• 직반입된 물품의 확인방법

북한은 내부사정상 남한을 직교역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운송선박이 출항시 신고한 국가로 실제 운항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결국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하증권상의 운송목적지와 실제운송 경로가 상이할 수밖에 없어, 통관시에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과 당해 선박의 최근 2개월간의 기항증명서(ports of call) 및 선박항해일지(voyage memo)에 의해 당해선박의 북한입항 여부와 당해 물품의 북한선적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하여 주고 있다.

• 제3국 단순 경유물품

단순경유라함은 운송상의 이유 등에 의해 제3국에서 환적, 일시장차 등만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반입한 물품이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지 않은 물품 즉 제3국에서 수입통관후 국내반입된 물품은 남북교역 대상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일반수입 물품으로 취급되어 관세도 비과세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 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3국 단순경유 여부 확인방법은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까지의 선하증권에 의거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제3국에서 환적·일시장치 등으로 단순경유하였음을 제3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거 확인한다.

(다) 반출물품 통관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수출품과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 사용)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레이다, 고성능컴퓨터, 야간투시경 등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고시)」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의 부정유출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7) 관세 등

(가) 관 세

법 제26조제2항에 의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운송(제3국 단순경유 포함)된 반입물품중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직운송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물품은 관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나) 내국세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 등 내국세는 반입통관시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시 과세표준에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은 일반수입 물품과 같이 「관세평가시행세칙」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된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실제 지불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 관세환급

일반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이를 환급한다.

마. 위탁가공교역

(1) 위탁가공교역 개요

대북한 위탁가공교역은 가공임지급을 조건으로 가공한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의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동가공제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교역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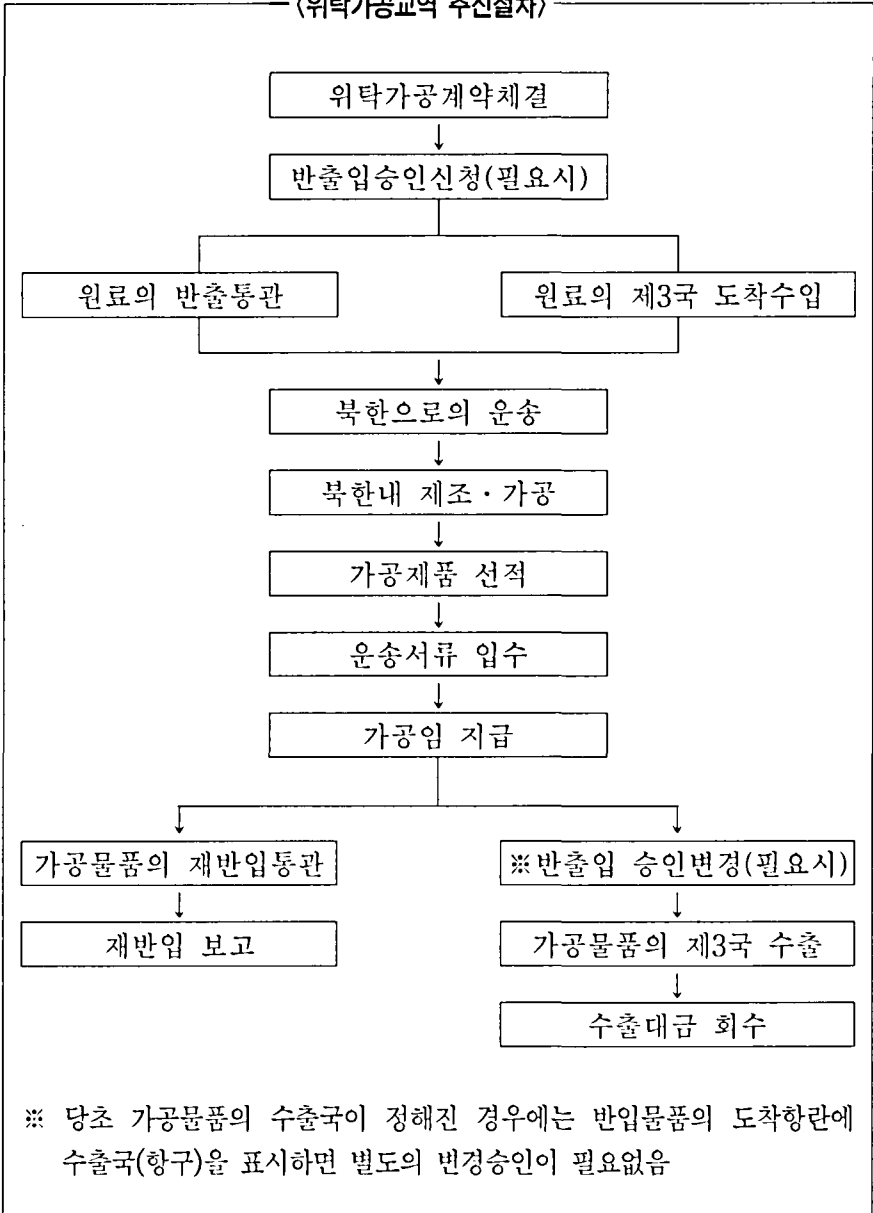
(2) 반출입 승인절차

남북한간의 위탁가공교역은 일반물품 반출·입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다만, 시설재를 공급하는 위탁가공교역에 있어 기계·장치·설비 공급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으로 보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 고시 제3조)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은 무상반출입 등 거래형태로 인해 반출입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위탁가공교역에 있어서는 승인절차 없이 반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반출입에 제한이 있는 품목은 제외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위탁가공구역 추진절차)



3.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

경제협력사업자금과 반출·반입자금 지원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에 의해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근거하며, 이에 따라 대북 투자, 교역·위탁가공에 대한 기금지원을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지원대상

(1) 경제협력사업자금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2) 반출·반입자금

북한으로 물품(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포함)을 반출하거나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나. 지원조건 및 지원제외 대상

경제협력사업자금 및 반·출입자금에 대한 자금별 용자 지원조건과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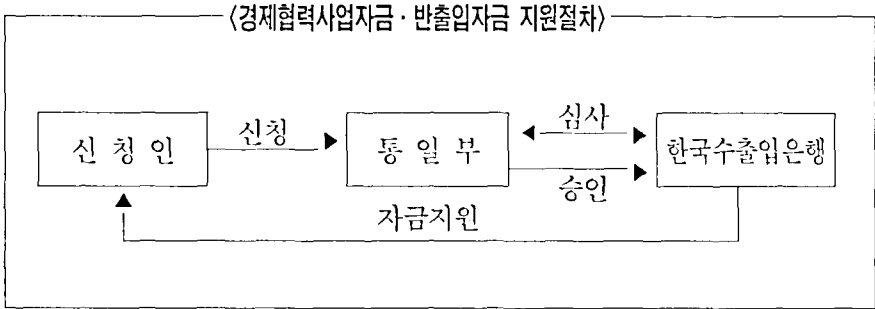
(1) 자금별 지원조건

자금종별	지원 한도	이자율	기 간	담 보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소요자금의 70%범위 내	국고채 3년 유통 수익율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지급보증서 등
반출·반입자금대출 ·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	소요자금의 70%범위 내	·	2년 이내	지급보증서 등
·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소요자금의 70%범위 내	·	1년 이내	지급보증서 등
·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	소요자금의 70%범위 내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지급보증서 등
·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	소요자금의 70%범위 내	·	2년 이내	지급보증서 등

(2) 지원제의 대상

-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경제협력사업자금에 한함)
-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자가 해외 현지법인인 경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대외거래·외국환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통일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예외취급 가능)
- 기금의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다음의 대출제한기업에 해당하는 자(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승인을 얻어 예외취급 가능)
 - 최근 3년 이상 연속 걸손 발생기업
 -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 본 기금 이외의 금융자금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다. 지원절차



경제협력사업자금 및 반출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자금 대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에 대해 통일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자금 대출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신청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신 청 서 류)

- 자금대출신청서(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자금대출신청서 첨부서류
 - 사업승인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사본)
 - 대출신청 내용(소정양식)
 - 이사회기체건의서 1부(소정양식)
 -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소정양식)
 - 제작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소정양식)
 -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소정양식)
 -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정부는 기금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고객중심의 기금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정책자금적 기능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

<참고자료>

■ 남북교역의 역사

일 자	주 요 내 용
'88. 7. 7	○ 「7·7선언」 발표
'88.11.14	○ 최초 반입승인(대우, 도자기 519짐, 104천불)
'89. 1.26	○ 최초 반입통관(효성물산, 진기동 200톤, 660천불)
'89. 6.12	○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제정
'89. 2. 4	○ 최초 반출승인(현대상사, 잠바 5,000벌, 69천불)
'90. 8. 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 ○ 「교류협력기금법」 제정
'90. 8.13	○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90. 8.31	○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제정(관세청)
'90. 9.25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90. 9. 4~ '92. 9.18	○ 제1~8차 남북고위급 회담
'91. 5. 6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미술품·우표·화폐 등을 반입제한품목으로 분류
'91. 7. 1	○ 교류협력국 창설 ○ 반·출입승인 1억불 돌파(반입 105백만불, 반출 12백만불)
'91.12.10 ~12.13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제5차 고위급회담)
'92. 1.16 ~ 1.26	○ 대우 김우중 회장 북한방문
'92. 9.17 ~ 9.18	○ 「3개 부속합의서」 채택(제8차 고위급회담)
'92. 9	○ 최초 위탁가공교역(코오롱상사, 셔츠 6,216벌, 38천불 반입)
'92.10. 5	○ 최초 협력사업자 승인(대우)
'93. 3.12	○ 북한 NPT탈퇴선언
'93. 3.19	○ 이인모 송환
'93. 7	○ 반출·입승인신청서류 간소화(재무제표 등 참고자료 제출 생략)

일 자	주 요 내 용
'94. 2. 5	○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제정(관세청)
'94. 6.20	○ 「남북한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정
'94.12. 1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승인절차 명시
'94.12.31	○ 반·출입 통관누계 7억불 기록
'95. 1. 3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WTO체제 출범 관련 품목구분
'95. 4	○ 「남북한교역대상물품통관관리지침」 제정 - 남북교역물품의 통관절차 간소화
'95. 4. 1	○ 남북교역 상담창구 확대 - 무역협회 부산지부 등 10개 지부에 남북교역 상담창구 개설
'95. 5	○ 최초의 협력사업 승인(대우)
'95. 6.25 ~10. 7	○ 쌀 15만톤 대북 지원
'95.12.31	○ 반·출입 교역규모 연 2억불 돌파
'95.12.15	○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96. 1.26	○ 최초 합영회사 설립(대우 ↔ 민족산업총회사)
'96. 3. 5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HSK분류표 개정에 따른 품목개정
'96. 5.13	○ LG 대북임가공으로 생산한 컬러TV 첫반입
'96. 7. 6	○ 대우 기술자 최초 방북승인
'97. 1.15	○ 소형선박(2,000톤급 미만)의 인천항 입항금지조치 해제
'97. 4. 1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절차 폐지에 따른 절차 변경 등
'97. 7.10	○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항 승인 절차 간소화
'97. 9.13	○ 북한 영공개방 합의
'97.12.31	○ 남북교역 규모 연 3억불 돌파(누계 15억5천만불)
'98. 1.12	○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 남북교역의 직교역화 및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추진
'98. 2.25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촉구(대통령 취임사)
'98. 3. 2	○ 최초 평양 FIR 통과항로 시범운항(대한항공)

일 자	주 요 내 용
'98. 4.23	○ 대구/평양 FIR 통과항로 개설
'98. 4.30	○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등
'98. 6.16 ~ 6.23	○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판문점 통과 북한방문 - 한우 500두, 차량 50대 반출(98년말 현재 한우 1,001두, 차량 100대 반출)
'98. 6.19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축소(205개 → 178개) 등
'98.11.17	○ 금강산 관광 지원 통신망 개설(6회선)
'98.11.18	○ 금강산 관광선 첫 취항(98년말 현재 23회운항, 10,544명 관광)
'98.12.3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고시」 개정 - 교류협력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99. 2. 4	○ 판문점 임시 세관검사 및 출입심사 사무소 설치 (남북회담사무국 전방사무소)
'99. 2. 4 ~ 2. 6	○ 정주영 명예회장 등 일행 7명 판문점 경유 왕래 - 차량(다이내스티 1대) 반출확인 및 휴대품 검사 출입심사
'99. 3. 9 ~ 3.11	○ 정주영 명예회장 등 일행 5명 남북왕래
'99. 5.18	○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통신회선 증설(2회선, 총 8회선)
'99. 6.10	○ 교류협력국 교류3과를 교역과로 개칭 - 협력사업용 물자의 반출입승인업무는 협력사업 주관과로 이관 - 인도지원물자 반출입승인업무는 인도지원국으로 이관
'99. 8.16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반출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조정(178 → 182개)
'99.10.27	○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 - 대북투자, 교역·위탁가공에 대한 기금지원 기준 마련
'99.12.15	○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 승인

일 자	주 요 내 용
2000. 1. 7	○ 평화자동차 자동차 수리·개조 및 조립공장 설립 승인
2000. 3.13	○ 삼성전자 남북 S/W 공동개발사업 승인
2000. 4.28	○ 「남북위탁가공교역협의회」 창립
2000. 6.13 ~ 6.15	○ 남북정상회담(평양) - 남북경제협력 등 5개분야 합의(남북공동선언 채택)
2000. 7.24	○ KEDO 사업 지원용 통신 2회선 증설(총 10회선)
2000. 7.29 ~ 7.31	○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서울)
2000. 8.11	○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과 북측 「통일각」 간에 광케이블 설치
2000. 8.15 ~ 8.18	○ 제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서울·평양 각 100명)
2000. 8.22	○ 현대아산 개성공단 조성 합의서 체결
2000. 8.29 ~ 9. 1	○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평양)
2000. 9.18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2000. 9.22 ~ 9.28	○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백두산)
2000. 9.24 ~ 9.26	○ 제1차 남북 경제협력 실무집족(서울) -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 경협제도화 문제 논의
2000. 9.24 ~ 9.26	○ 제1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제주)
2000. 9.26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체결 - 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
2000. 9.27 ~ 9.30	○ 제3차 남북장관급 회담(제주)
2000. 9.28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반출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조정(182→185개)
2001.10.31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방북유효기간 1년→3년 연장 등)
2001.12.31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반출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조정(185→186개)
2001.12.31	○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

일 자	주 요 내 용
2002. 8.12 ~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 경추위, 이산가족상봉, 금강산당국 회담 등 일정 10개항 합의
2002. 8.27 ~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경추위 개최 -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병행 실현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4개 합의서 조기 발효 - 개성공단 건설 금년내 착공 등 8개항 합의
2002. 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 동해선 착공식 개최
2002.10.19 ~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 - 철도·도로 조속 진척 노력 - 동행합의서, 개성공단 건설 등 관련문제 등 8개항 합의
2002. 11.6 ~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경추위 개최 - 철도·도로의 조속한 인건 - 12월하순 개성공단 착공 - 4개합의서 동시 발효 등 6개항 합의

〈부록 1〉

■ 남북교역 관련 서식	75
1.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관련서식	77
2. 남북교역 및 수송장비운행 관련서식	98
3. 자금대출 신청서	115

1.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관련서식

[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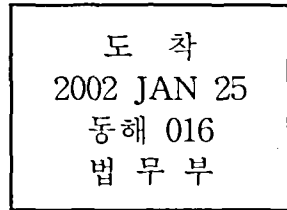
심사확인인(제10조제2항 관련)

(예 시)



(규격 30mm×20mm)

(예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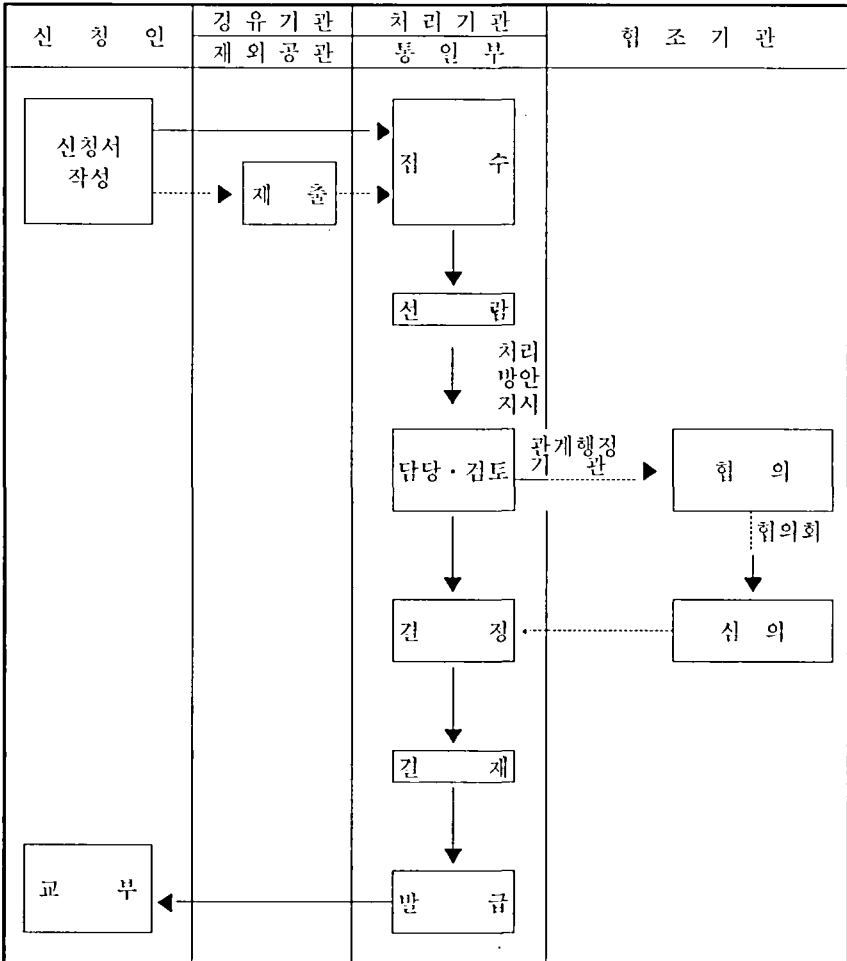
(규격 30mm×20mm)

(뒷 면)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포함)
3.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합니다.)
4.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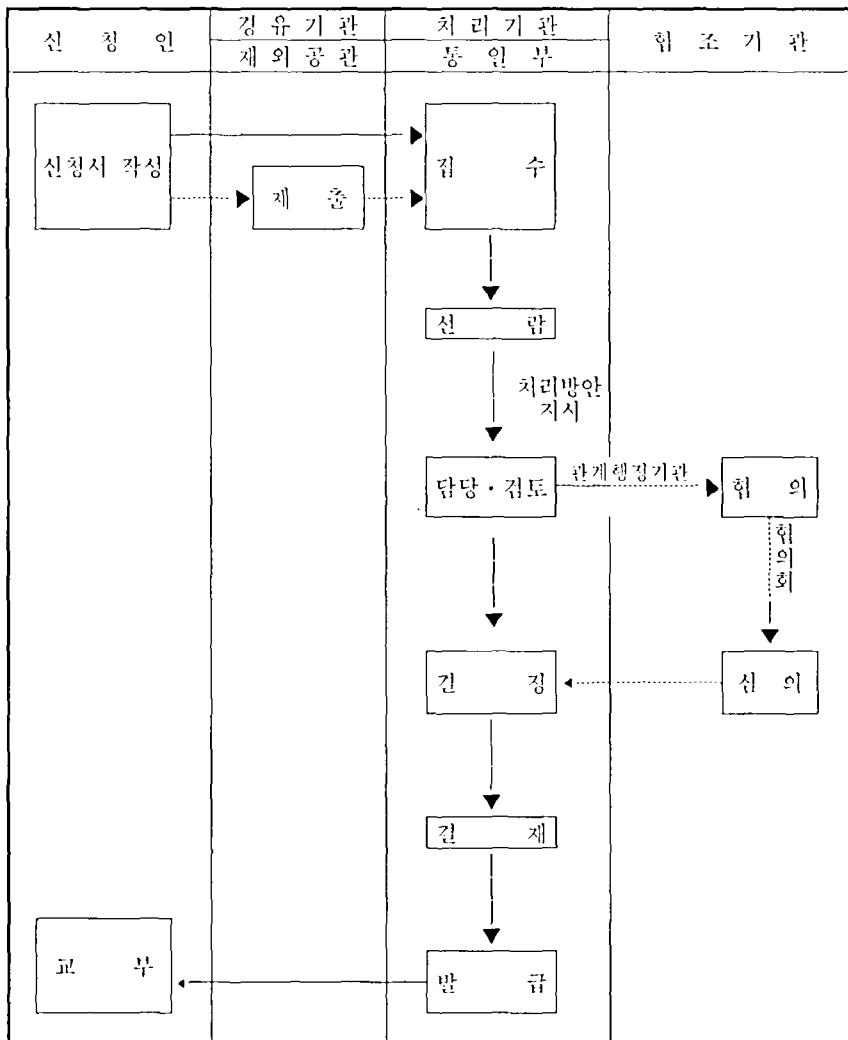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넷 번)

- 첨부서류 : 1.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 포함)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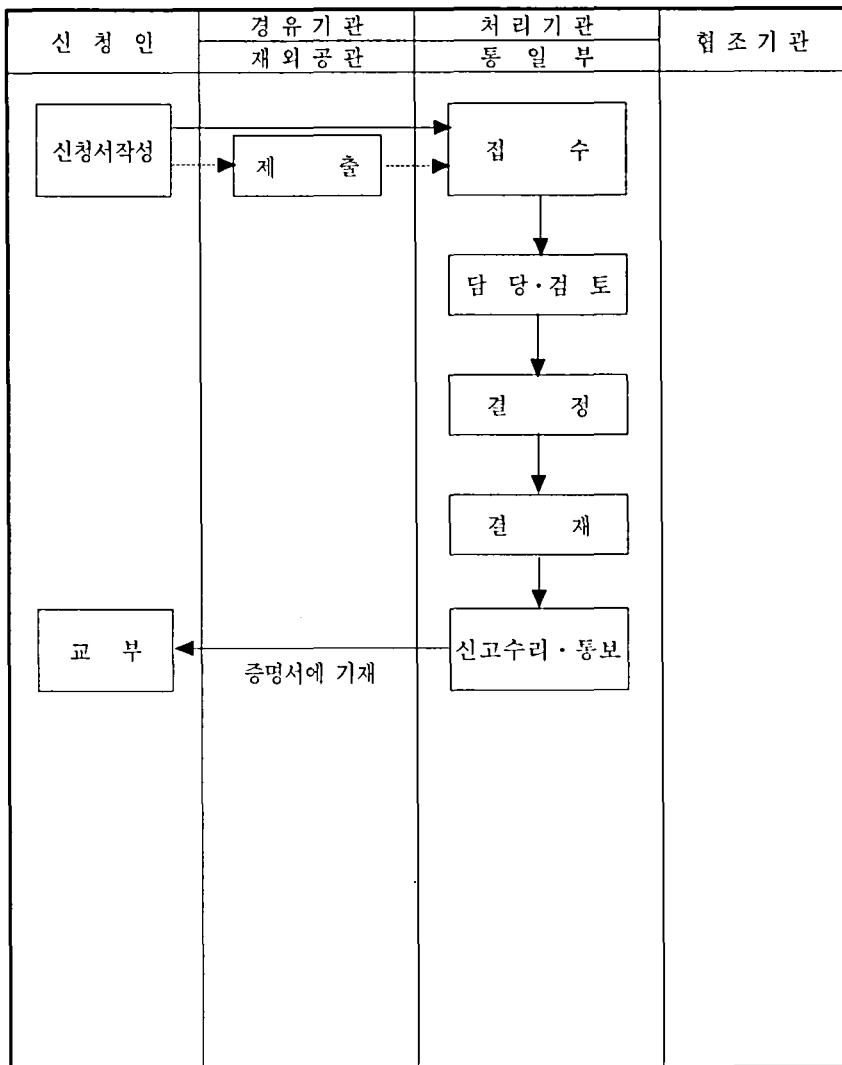
수 시 북 한 방 문 신 고 서

				처리기간	7일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① 신 청 자	성 명		성 별	남·여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전화번호			
	직 장		전화번호			
② 방문증명서 발급번호						
③ 방문경위 (입북비자회특등)						
④ 방문목적 (사 유)						
⑤ 방문기간 (일 정)						
⑥ 방문경로 (경유지포함)						
⑦ 여행자 내 연고자 또는 집족인물	성 명	나 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관 계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을 신고하며, 이 신고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기간 및 그 진후에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 및 남북한관계 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p> <p>구비서류: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 사본 1부 또는 초청장 원본 1부 등</p> <p>신 청 인: (인) (또는 서명)</p>						
동 일 부 장 관 귀 하				수수료		
				없음		

11022-00611민
90.10.12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미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제4호서식]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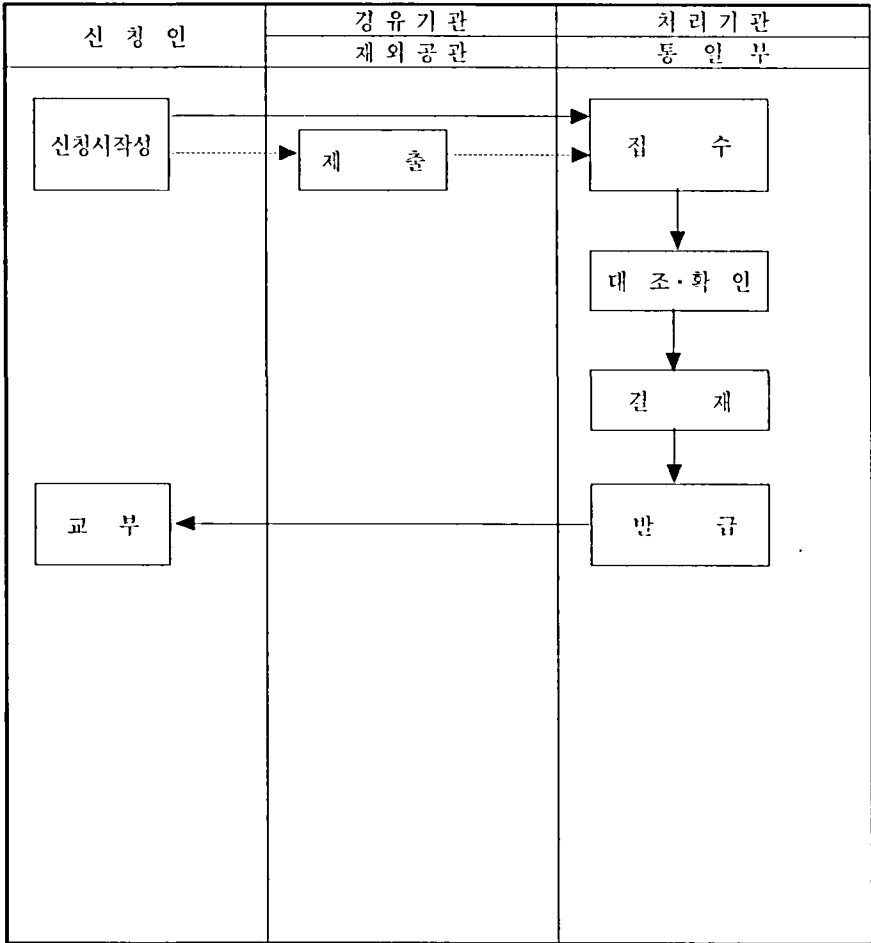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전화:)		
	방 문 지			
② 재발급 사 유		사 진 3.5cm × 4.5cm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이 재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에 서약한 사실을 준수할 것입니다.</p> <p>첨부서류 : 1. 증명서 재발급용 사진 2매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p> <p style="text-align:right;">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right;">신청인 : (인)</p>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8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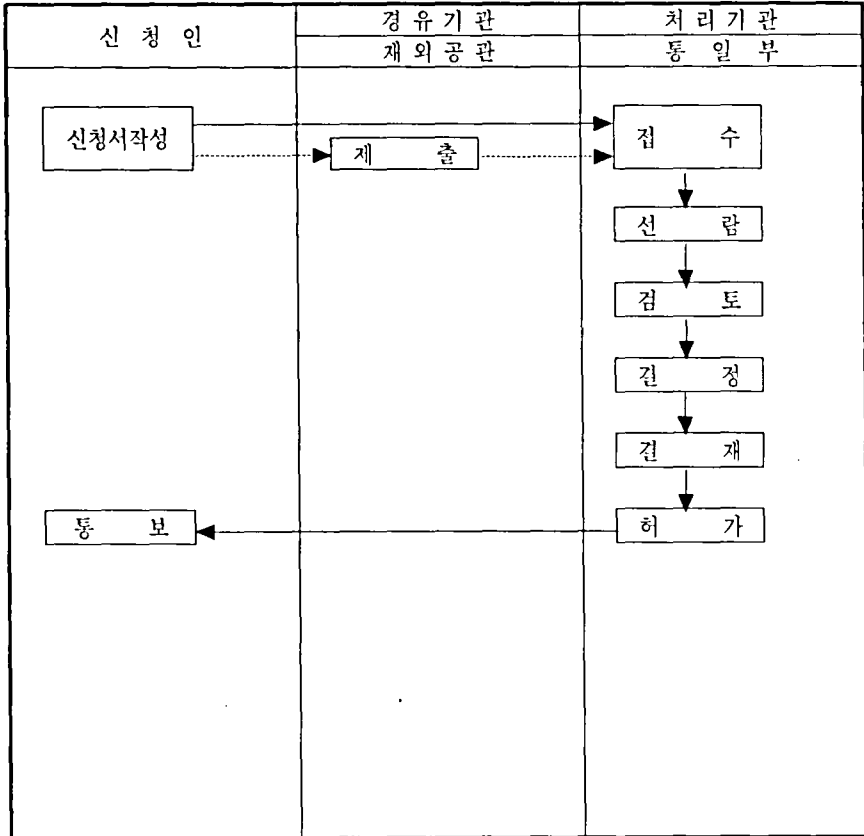
- 첨부서류 : 1. 방문증명서용 재만급용 사진 2매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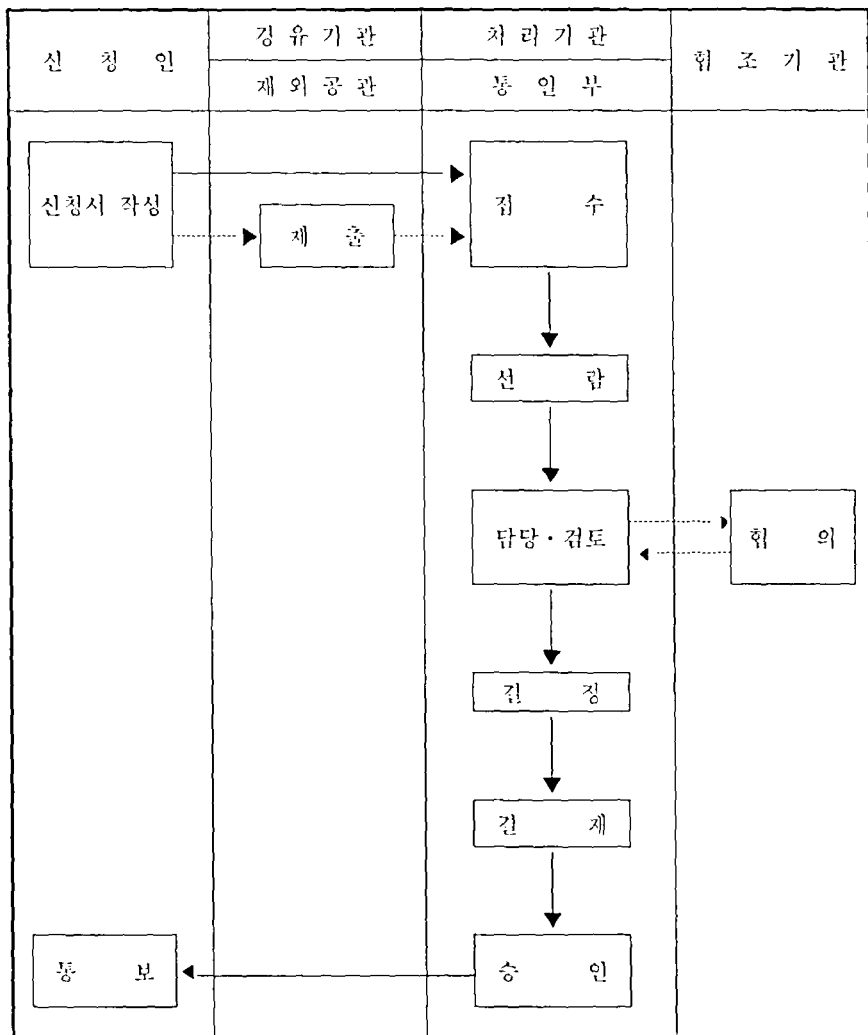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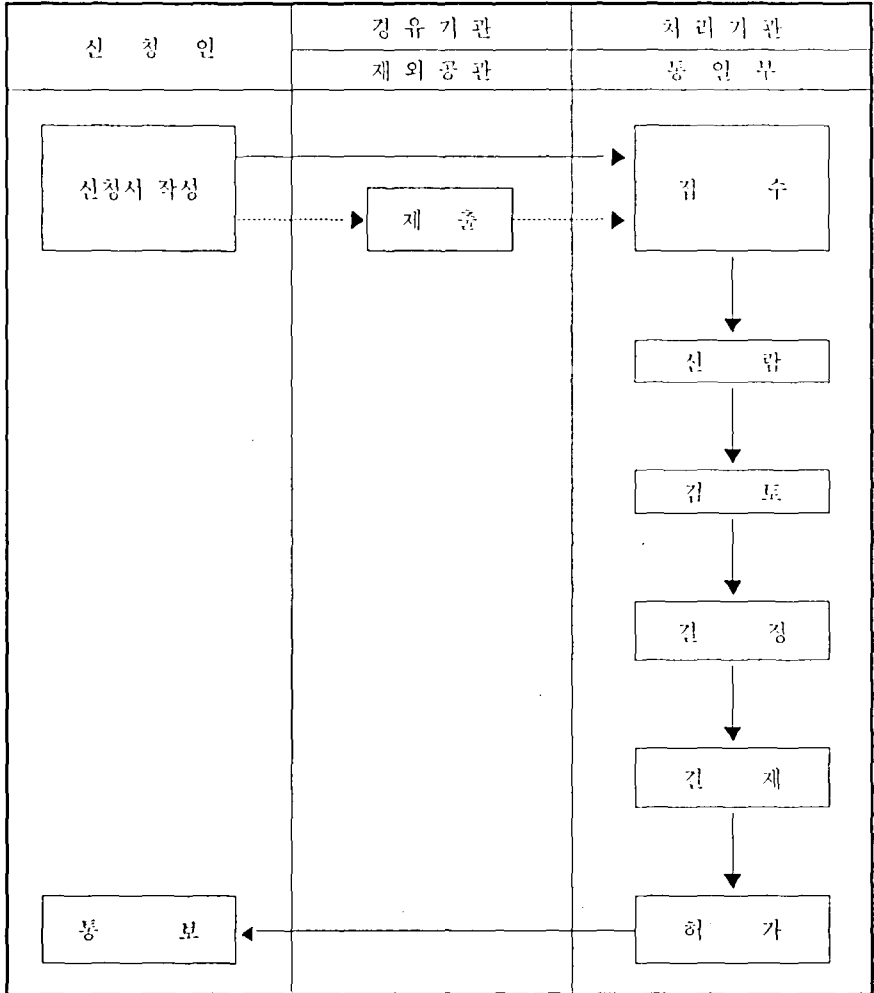
-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북한주민집촉건과보고서

① 보고인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연락처	(전화:)				
	직 업	(전화:)				
② 피 집 촉 인적사항	성 명	나 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신청인과의 관 계	
③ 집촉목적						
④ 집촉인정 및 장소						
⑤ 집촉경위						
⑥ 집촉방법						
⑦ 집 촉 건 과 개 요						
<p>※ 세부내용 별지작성</p>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집촉건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align="center"> 년 월 일</p> <p align="right"> 제 출 인: ①</p> <p align="center">동 일 부 장 관 귀 하</p>						

11022-01011민
90.10.12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별지 제11호서식]

출 입 신 고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하고 바르게 적어 주십시오. • <input type="checkbox"/>속은 적지 마십시오. • 방문증명서 속에 보관하십시오. 		
성 명	한자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후단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 여
방문증명서번호	직업 · 직장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주지 주소 ·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방문지 주소 ·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방문목적	출발지(탑승편명) ()	
방문예정기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 명	
공용란	심사인	

80mm × 118mm
인쇄용지(OCR급)105g/m²

[별지 제12호서식]

교역보고서

보 고 자	① 상 호		② 무역업고유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보고사유				
보 고 개 요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 (인)				
동 일 부 장 관 귀 하				
첨부서류 : 물품의 반·출입실적서 1부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80g/m²)

[별지 제13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협력사업자승인증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구분

주소

남북고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협력사업자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2. 남북교역 및 수송장비운행 관련서식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

(용)

처리기간	20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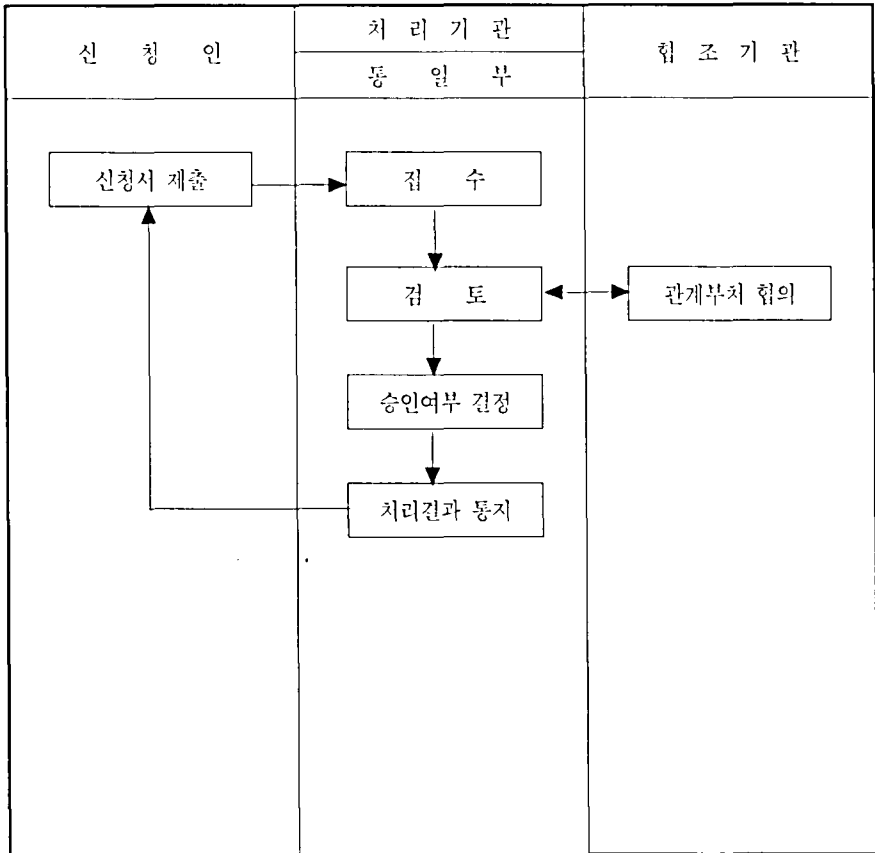
① 반입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신고번호	⑤ 송화인 ⑥ 견제조건
(인)	대금지급방법 :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기 타() 금 액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③ 인산지	견제기간
④ 선적항	⑦ 가격조건
⑧ HS부호	⑨ 품목 및 규격
⑩ 단위 및 수량 ⑪ 단가 ⑫ 금액	
⑬ 승인조건	
⑭ 승인유효기간	
⑮ 승인번호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첨부서류 : 뒷면 <div style="text-align: center;">2002 . .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통 일 부 장 관</div>	

32313-05311번
99.6.3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 첨부서류 :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 5부
 2.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화약서(offer sheet) 1부
 (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3. 반입대행계약서 1부(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 1부(해당물품에 한함)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대 북 한 반 출 승 인 신 청 서

(용)

처리기간	20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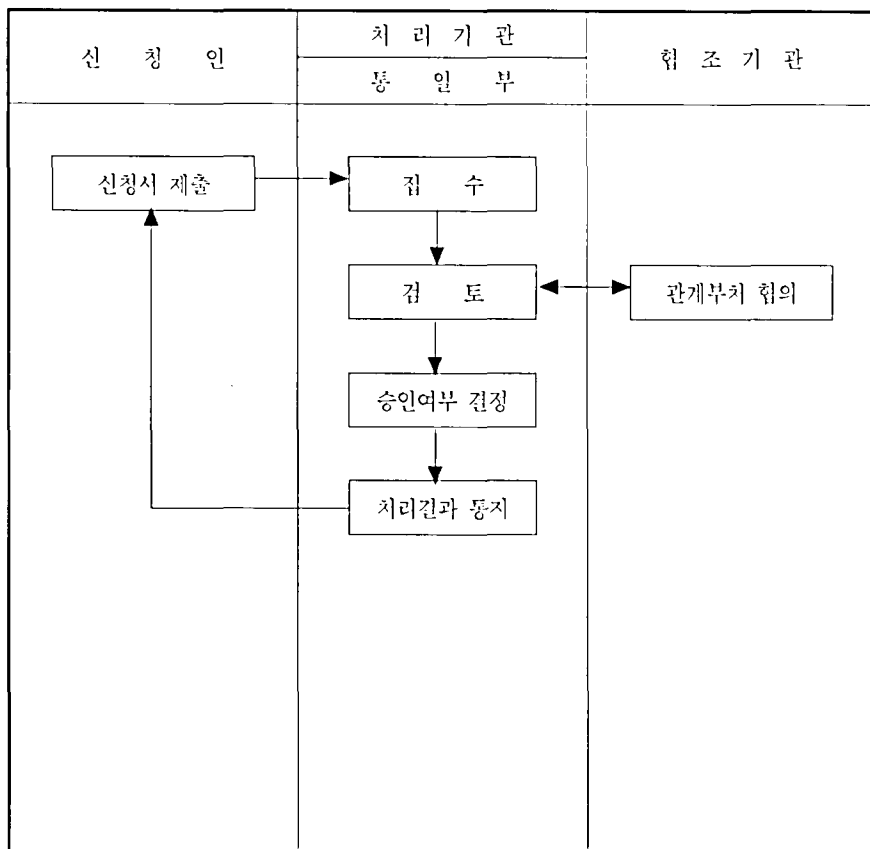
(1) 반출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신고번호		(6) 수 취 인 (인) (7) 견제조건		
(2)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한() 기 타()		
(3) 원 산 지		금 액		
(4) 선 직 향		건 제 기 간		
(5) 도 착 향		(8) 가격조건		
(9) HS부호	품 명 및 규 격	(11) 단위 및 수량	(12) 단 가	(13) 금 액
(14) 승 인 조 건				
(15) 승 인 유효 기 간				
(16) 승 인 번 호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첨부서류 : 뒷면 <div style="text-align: center;">2002</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통 일 부 장 관</div>				

32313-05411민
99.6.3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 첨부서류 : 1.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 5부
 2.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화약서(offer sheet) 1부
 (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3. 반출대행계약서 1부(공급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 1부(해당물품에 한함)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반출입승인신청서

(용)

처리기간	20일
------	-----

① 신청인(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신고번호	(인)		(7)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인)		(8) 결제조건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송금환() 추심어음() 기 타()
			금 액 결제기간 ⑨ 가격조건
③ 송 화 인			(10) 결제조건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송금환() 추심어음() 기 타()
	반 출	반 입	
④ 원 산 지			금 액
⑤ 신 직 항			결제기간
⑥ 도 착 항			(11) 가격조건
반출물품의 명세			
⑫ HS부호	⑬ 품 명 및 규 격	⑭ 단 위 및 수 량	⑮ 단 가 ⑯ 금 액
반입물품의 명세			
⑰ HS부호	⑱ 품 명 및 규 격	⑲ 단 위 및 수 량	⑳ 단 가 ㉑ 금 액
㉒ 승 인 조 건			
㉓ 승인유효기간		반입 :	
㉔ 승 인 번 호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첨부서류 : 뒷면 2002 통 일 부 장 관			

32313-05511민
99.6.3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70g/m²

첨부서류 : 1. 반출입승인신청서 5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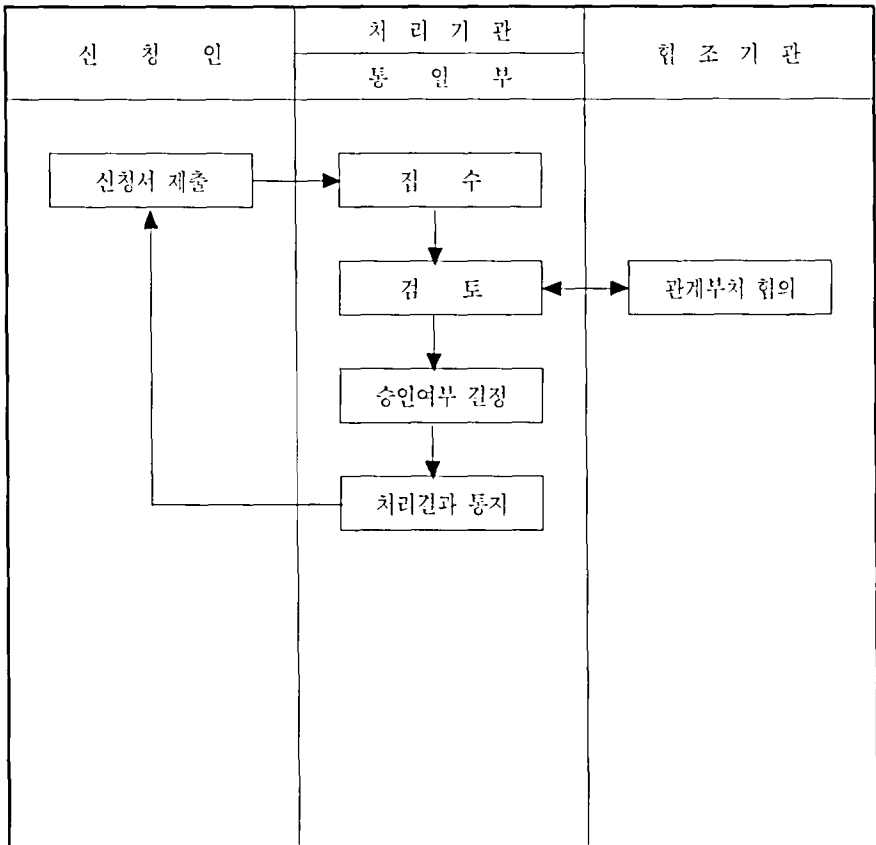
2. 반출·반입계약서 1부

(반출·반입을 한 계약서에 작성하되, 별도의 계약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를 첨부)

3.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반출입 승인 사항 변경 승인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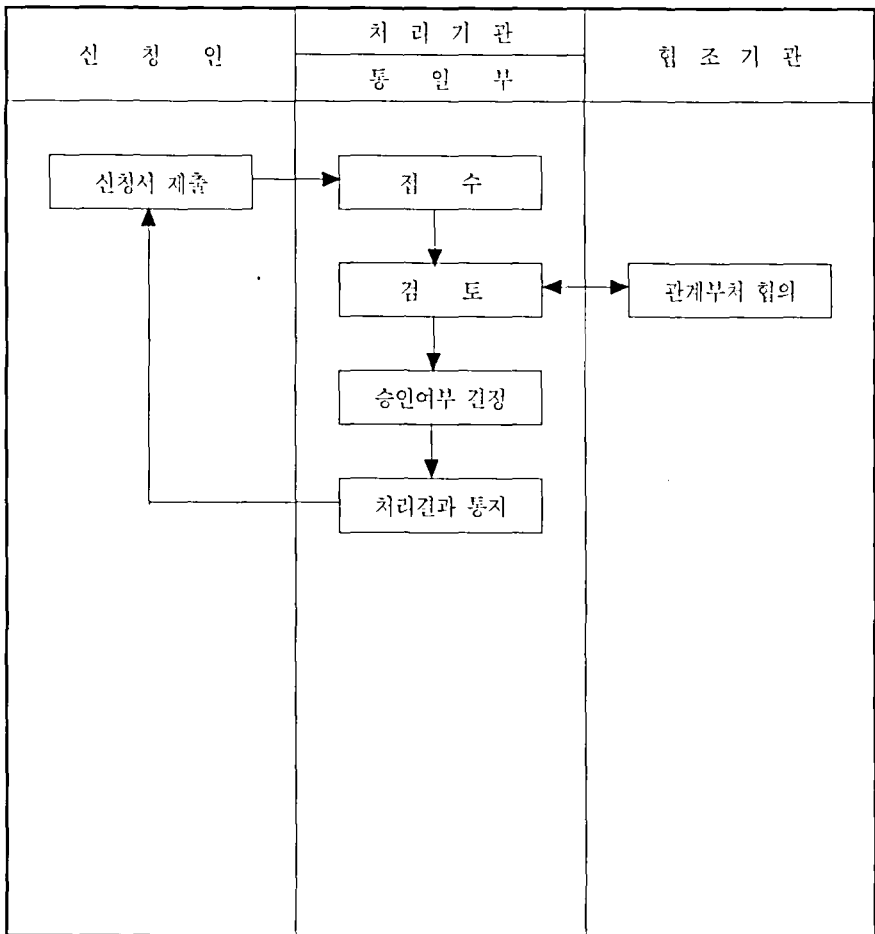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상호·주소 ·성명·전화)	무 의 업 신고번호	② 변경진 승인일자	
		③ 변경진 승인번호	
		④ 승인사후관리은행명	
⑤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시오.)			
변 경 진		변 경 후	
⑥ 승 인 조 건			
⑦ 승인유효기간			
⑧ 승 인 번 호			
<p>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p> <p>첨부서류 : 뒷면</p> <p style="text-align: center;">2002. . . .</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p>			

32313-05611번
99.6.30 개정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70g/m²

- 첨부서류 : 1. 반출입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5부
 2. 변경계약서 1부
 3. 변경승인신청 사유서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교역 보고서

보고자	① 상 호		② 무역업신고번호	
	② 주 소		④ 진 화 번 호	
	③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보고사유				
보 고 개 요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고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귀 하</p>				
<p>구비서류 : 1. 반출·입 실적 1부 2. 보고개요의 상세한 내용 1부</p>				

11022-01011민
90.10.12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70g/m²

수송장비(철도·항공기·자동차 등)운행승인신청서

처리
기간 14일

신 청 인	상호(명칭)			
	주 소		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서번호)	
수송장비의 종류	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기타	수송장비명칭		
운 행 목 적				
운 행 기 간				
운행예정노선				
운행계획개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뒷면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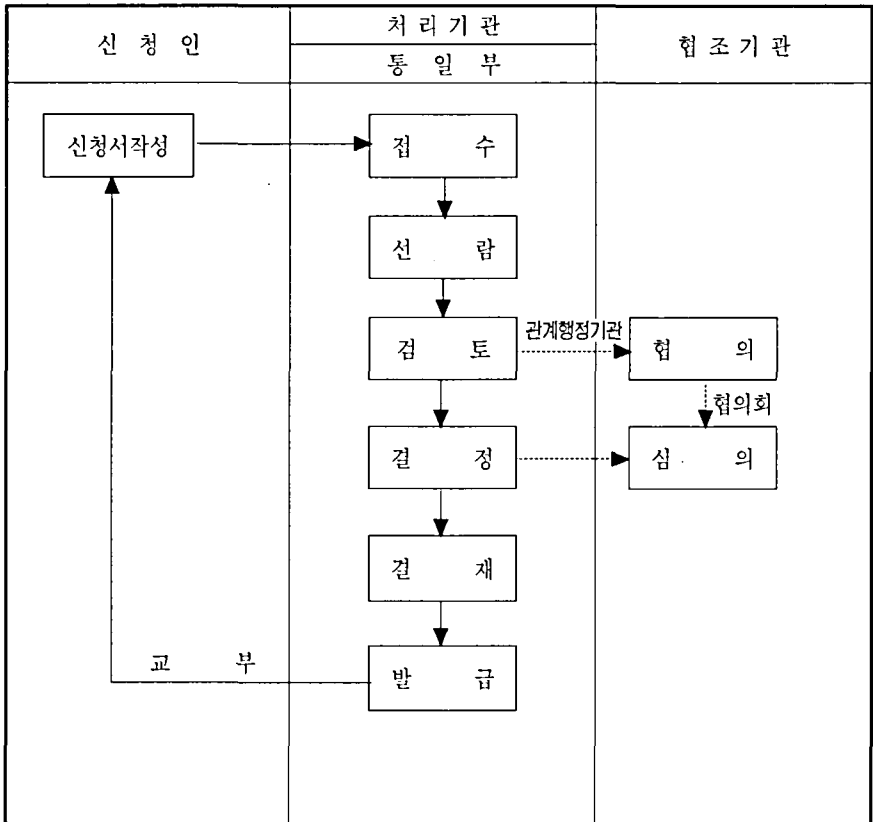
11313-02511번

94.5.31 승인

210mm×29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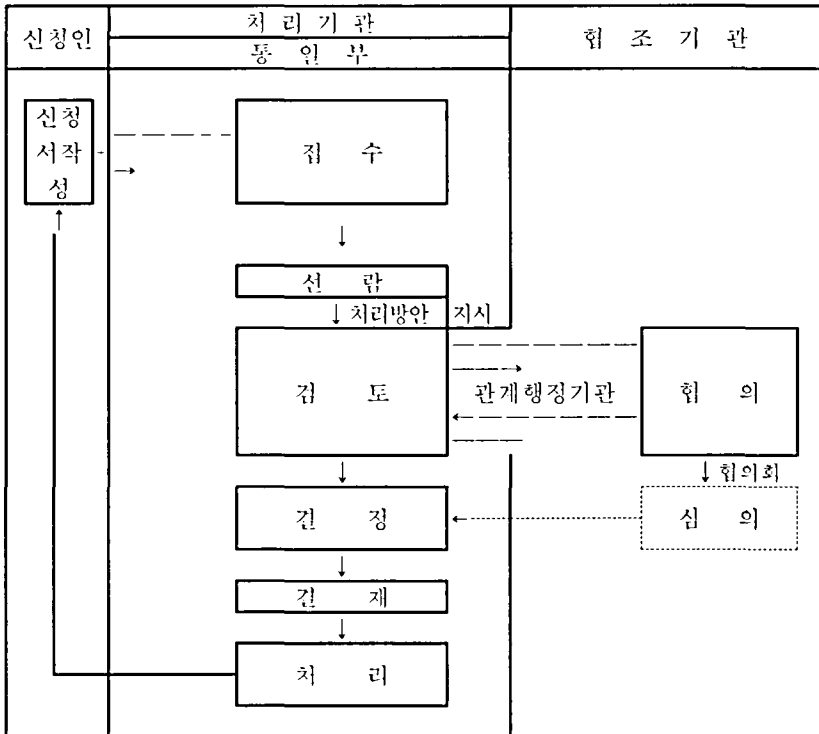
인쇄용지(특급)60g/m²

- 첨부서류 : 1. 운행계획서(운행경위를 포함한다)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재원 내역서(사용한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재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부
 3.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첨부서류
1. 북한주민집속승인서 사본
 2. 운행계획서(운행경위를 포함한다) 1부
 3. 선박제원 1부
 4. 선박국적증서 1부
 5.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화물 운송사업)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보험증서(P&I증명서) 1부
 8. 선원명부 1부
 9. 통신체계도 1부
 10. 항로도 1부
 11. 선박검사증서(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2.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계약서
(정부 및 대한적십자사물자를 수송하는 경우 및 수산물을 수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13.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남북간 부정기 4회 이상 선박운행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징기운행신청에 한한다) 1부
 1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선박정기운행승인서

상 호 (명 칭)		운행승인번호	
주 소		건 화 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송장비명칭			
운 행 노 선			
운 행 목 적			
운 행 승 인 유효 기 간			
<p>* 승인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 회 이상 운행하지 않을 경우 정기운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업을 위해 용신하는 외국직선은 남북간 운행사업에 한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3. 남북간 및 제3국과 인계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선박운행 후 그 결과를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5. 기타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영을 승인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동 일 부 장 관</p>			

210mm × 297mm

선박무정기운행승인서

상 호 (명 칭)		운행승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상 명		주민등록번호	
수송장비명칭			
운행노선			
운행목적			
운행승인 유효기간			
<p>* 승인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인기간 내에 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승인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진에 수송장비운행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3조의 서류를 허위 기재한 경우 승인을 취소합니다. 4. 선박운행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5. 기타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동 일 부 장 관</p>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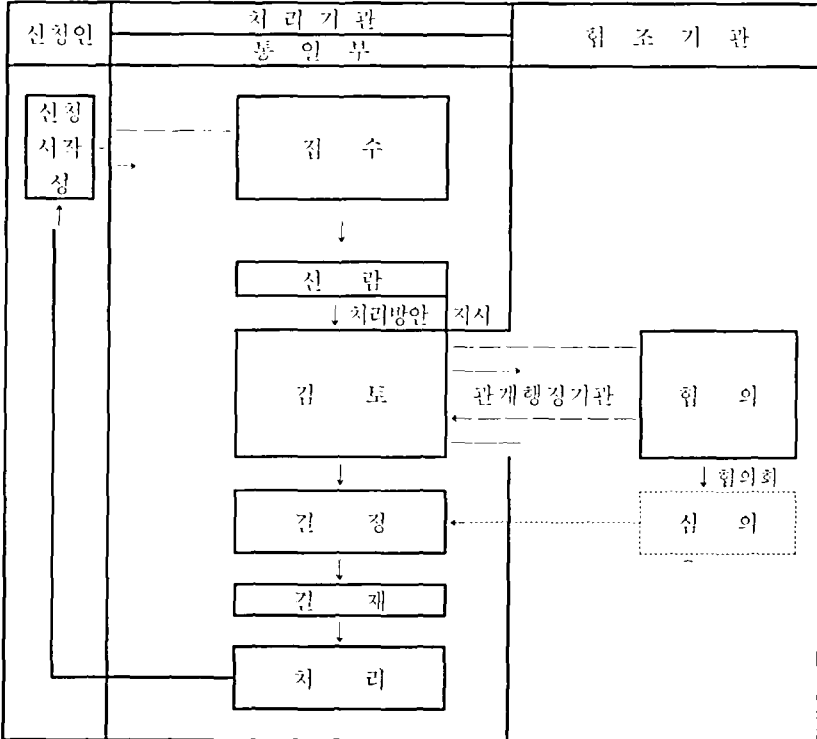
신청인	상호 (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서번호)	
변경진승인번호		변경진승인일자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 기입하십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귀 하</p>			
			수수료
			없 음

11313-02611민
94.5.31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60g/m²

첨부서류 변경사항 해당서류 각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부록 2>

▣ 남북교역 관련 법규	117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19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127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47
4.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150
5.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152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165
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174
8.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177
9.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179
10.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187
11.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	194
12. 남북협력기금법	198
1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202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208
15.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210
16.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230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 1992. 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 1994. 12. 31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 1996. 12. 30 법률 제5211호(대외무역법)
-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4 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 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 6 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조(협의회의 의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 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 ①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 등) ① 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동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의자도입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한 자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칙생략〉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1993. 3. 6 대통령령 제 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8호
(교통세법시행령)
-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1995. 12. 6 대통령령 제14819호
(병역법시행령)
- 1996. 5. 31 대통령령 제15006호
(외국환관리법시행령)
-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1997. 12. 15 대통령령 제15539호
(우편법시행령)
- 1998. 10. 23 대통령령 제15920호
-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5호
- 2001. 10. 31 대통령령 제1739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출입장소)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1. 판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 3 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 조(수당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한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 7 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준용규정 등) ①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남북한 왕래 등

제 9 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단수방문증명서"라 한다)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② 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③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색, 단수방문증명서는 4면, 수시방문증명서는 10면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 단수방문증명서는 4면, 수시방문증명서는 10면

④ 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 명
3. 성 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 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제①의 수시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방문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신청) ①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여권)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는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수시방문증명서 소지자의 신고의무)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을 최초 방문한 이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북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제공) ①통일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방문안내교육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증명서의유효기간등) ①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3년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 등) ① 북한방문증명서중 단수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북한을 방문하고 귀환후 7일 이내에, 수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하고,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남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남한을 방문하고 귀환할 때에 출입장소에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 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집촉승인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집촉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집촉 15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집촉을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북한주민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19조의 2(접촉승인유효기간)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승인을 함에 있어서 접촉목적에 따라 3년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 3(접촉결과보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로 본다.

제20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1조의 2(심사확인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조(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심사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4 장 교 역

제25조 <삭 제>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 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이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이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외의 변경

제27조 <삭 제>

제28조 <삭 제>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협력사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3년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한 만한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호(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3조(취소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 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 ② 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통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 2(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칙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
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
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
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운행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 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 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 승
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의 운행을 승인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 승인서를 교부한다.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우편 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의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를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업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역무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수당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되며,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 제>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 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의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발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생략〉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3호 2002.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북한방문신고) 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방문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 7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북한방문신고서에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 사본 또는 초청장 원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북한방문안내교육) ①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안내교육을 받고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목적·방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문기간 및 최근 북한방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신청)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용 사진(재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2매와 동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방문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동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제7조(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 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제외국민의 북한방문신고서)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접촉 승인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 공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신고서 등) ①영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역보고서에 물품의 반·출입실적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4.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1990. 8. 13 통일원고시 제90-1호
개정 1998. 12. 31 통일부고시 제1998-4호
개정 1999. 5. 28 통일부고시 제99-1호

제 1 조(목 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을 직접출입하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적용한다.

제 3 조(반입금지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3. 총포·도검 및 화약류 등
4.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5.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협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제 4 조(반출금지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제 5 조(제한적 휴대금지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남북한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된다.

1.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검역대상물품
3. 전락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4.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제 6 조(물품의 보관) 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 7 조(보관물품의 처리)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휴대한 물품 중 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8 조(과세 등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 제5조에 의한 반출입 승인을 받아 휴대한 물품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칙 및 별지 생략〉

5.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정 1990. 8. 31 관세청고시 제90-647호
개정 1998. 4. 13 관세청고시 제98-13호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고시·훈령
등 개정에 관한 고시)
개정 1998. 10. 26 관세청고시 제98-59호
개정 1999. 5. 27 관세청고시 제99-22호
개정 2002. 3. 28 관세청고시 제02-16호
개정 2002. 12. 10 관세청고시 제02-4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1조, 제2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제51조, 제52조와 관세법 제96조 제1호·제3호, 제241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북한간 왕래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북한지역을 직접 출입하는 남·북한 주민 및 외국인(이하 "남북한왕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휴대품 신고 및 검사

제3조(휴대품신고서 제출 등) 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방문증명서 또는 여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이 가족을 대표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남북한왕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대품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

제4조(신고대상물품) 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입여부를 휴대품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한 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지역에서 취득(무상포함)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2. 제9조에서 정한 특정물품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주류·담배·향수·농산물·한약재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
4.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서·영화·음반·조각물·사진·비디오테이프·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5.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6.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7.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독성 물질류
8. 앵속·아편·코카엣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제품
9. 동물(고기·가죽·털 포함)·식물·과일채소류·기타 식품류·농림축수산물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예 : 옹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매·울빼미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핸드백 등)

5. 남북한왕래자의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11.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12. 출경시 휴대반출 신고한 후 재반입하는 물품
 13. 남한지역으로 일시 입경하는 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 후 출경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또는 작업용품
 14. 남한으로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 후 출경시 반출할 물품
- ②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지급수단 등의 신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휴대품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의 검사시 세관공무원은 반출·반입 규제물품의 휴대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방법) ①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 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하거나 휴대품을 과도하게 소지한 자 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휴대품 통관

제7조(남북한왕래자 휴대품 인정범위) ① 본 고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왕래자의 방

문목적, 체제기간, 직업 등을 고려하여 남북한왕래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본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한다.

제8조(남북한왕래자 1인당 면제금액 등) ①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의 전체 취득가격에서 1인당 US\$300을 면제하되, 연도별 4회까지 허용한다. 다만, 남북한왕래자가 제3국에서 북한을 거쳐 입경하는 때에는 제3국에서 구입한 여행자휴대품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은 면제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면세 통관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
2.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3. 일시 입경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제9조(특정물품의 면세범위) ① 다음 각호에 제기된 특정 물품의 면세범위는 품목당 기준에 의하되, 제8조제1항의 전체 취득가격 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범위에서 제외하며, 단위당 용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향수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5.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1. 주류 : 1병(1리터 이하)
2. 담배 : 킬런 200개비, 엽킬런 50개비, 기타 담배 250그램
3. 향수 : 2온스
4. 농산물(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이내에 한함)
 - 참 기 림 5kg
 - 참 깨 5kg
 - 꿀 5kg
 - 고사리, 더덕 5kg
 - 잣 1kg
 - 기 타 5kg(품목당)
5. 한약재(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이내에 한함)
 - 인삼 300g
 - 녹용 150g
 - 기 타 3kg(품목당)

②세관장은 제8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반출입 규제물품)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별첨 반출·반입금지물품(별표1)은 반출·반입을 불허한다.

②다음 각호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을 허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이 허용된다고 고시한 반출·반입 제한물품(별표2)
2.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지급수단 등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CITES),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또는 약사법에 의한 규제물품
4. 기타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서 정하는 물품
-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제대상물품 중 관계법규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규제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반출입 규제대상물품 등의 처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휴대품유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남북한왕래자에게 교부하고 당해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제7조에서 규정한 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
2.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3. 제10조에서 규정한 반·출입 규제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된 물품의 처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제기된 물품의 통관은 제7조제2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에 제기된 물품은 제12조에 의해 과세통관한다.
3. 제1항제3호에 제기된 물품 중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반입금지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환시 반송 또는 반환한다.
4. 제1항제3호에 제기된 물품 중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추천 또는 승인을 득한 후 면세 또는 과세통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은 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반출입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서 규정한 면세범위를 초과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으로서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에 의거 관세를 제외한 제세를 부과하고,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 제세를 부과한다.

② 남북한왕래자 중 북한지역에서 3개월이상 체류한 자의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3조,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4장 승무원의 휴대품 인정범위 등

제13조(승무원휴대품 인정범위) 남북한을 왕래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자 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여행자휴대품검사에관한시행세칙 및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3.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2.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5.27)

1. 이 고시는 1999. 7.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반출·반입 금지물품

가. 반입을 불허하는 물품

-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 3)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5)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협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나. 반출을 불허하는 물품

- 1) 반입을 불허하는 물품
-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 (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별표 2]

반출·반입 제한물품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1)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2) 검역대상물품
- 3)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 4)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
합하지 아니한 물품

5.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신고서	대한민국 세관	
<p>이 신고서는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을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한 것이오니 성실히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방문기간, 방문사유, 직업이 동일한 일행인 경우에는 일행의 명단을 붙여 1인이 대표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p> <p>※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분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p>			
이 류		주민등록번호	-
방문증번호 (여권번호)	직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국적	귀환일자	년 월 일	동반가족수 명
선(가)명	출발지	여행목적	<input type="checkbox"/> 관광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여행 <input type="checkbox"/> 공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간
한국내주소 ()		-	

[신고대상물품]

(해당란에 (V) 표시)

소지물품	소지물품		소지물품	소지물품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판매목적의 상용물품			주유1병, 권린200개미, 향수2온스 초과물품		
전체 귀착가격 총액이 US\$300상 당액을 초과한 물품(총액: 원)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독성 물질류		
동산물5kg(갓1kg), 한약재3kg(인삼 300g·녹용150g)초과물품			동물·식물·과일류 등 검역대 상물품		
국헌·국가안보·공안·풍속지해 물품(불은서적·CD·영화 등)			국제협약에서 보호하는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등		
화폐·지폐·유가증권 등의 모조· 위조·변조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관하는 물품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류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한도액 초과 외화 및 원화 등		
출경시 휴대반출신고했다가 재반입 하는 물품			인시 임경하여 남한에서 사용하고 출경시 재반출한 물품		
세관에 보관하였다가 출경시 반출 할 물품			기타		

이 신고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고인 : (서명)

47000-00211일
2002.7.

105×225mm
개징

보존용지(1종) 120g/m²(재활용품)

(뒷면)

◆ 통관안내

- 신고대상물품이 있음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3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허용범위

- 북한지역에서 취득(무상 포함)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다음의 특정물품을 포함하여 연도별 4회, 1회당 전체취득가격 총액이 US \$300상당의 이내인 물품
 - 다만, 북한지역에서 3개월 이상 장기간 체류하다 돌아오는 장기체류자는 「이사물품수입통관에관한고시」에서 정한 면세범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남북한왕래자가 제3국에서 북한을 기차 입경하는 때에는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은 외국에서 직접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범위에 준함.

- 특정물품(단, 만 19세미만인 경우 주류·담배는 제외)

- 주류 : 1병(1ℓ 이하)
- 담배 : 권련 200개비, 잎권련 50개비, 기타담배 250g
- 향수 : 2온스
- 농산물(전체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 이내)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기타 : 5kg이내, 잣 : 1kg이내
- 한약재(전체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 이내)
 - 인삼 : 300g이내, 녹용 : 150g이내, 기타 : 3kg이내

※ 승무원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인정범위를 준용한다.

◆ 유의사항

- 휴대품 면세범위내의 물품은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지 않고 반입이 허용됩니다.
-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등은 세관에서 보관하고 휴대품유치서를 교부해드리며,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 등 조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면세 또는 과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북한산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를 부과하고, 외국산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를 포함한 제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못하면 재 방북시 반송하실 수 있으나, 반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면 관세법에 따라 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됩니다.

5.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별지 제2호 시식]

(앞면)

휴대품유치서 (세금계산서) CERTIFICATE OF CUSTOMS CUSTODY											
성명								신고번호			
주민등록번호								TAG번호			
이권번호								중량			
진화번호								기(신)명			
주소								입항일	년 월 일		
입국회수								면허일	년 월 일		
순 위	품명 및 규격 Description of Articles						수량 단위 평가 방법	세인 - 부호 과세가격 관세율 세	주세율 주세율 특별소비세율 교육세율 교	(기타세목) 부가가치세 세액 계	비고 (면세부호)
1							W % W	% W % W % W	% W		
2							W % W	% W % W % W	% W		
3							W % W	% W % W % W	% W		
4							W % W	% W % W % W	% W		
5							W % W	% W % W % W	% W		
건 제	김사자	주부	초상	주부	과장	국장	합 계	과세가격	W	W	환율(\$)
								W	W	W	
							W	W	W	남기세액	

473-00211민
'95.5.9승인

255m² × 280m² (인쇄용지(무급)54g/m²)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1990.	9. 25	통일부고시	제90-2호
개정	1991.	5. 6	통일부고시	제91-2호
	1994.	12. 1	통일부고시	제94-4호
	1995.	1. 3	통일부고시	제95-1호
	1996.	3. 5	통일부고시	제96-1호
	1997.	4. 1	통일부고시	제97-1호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1998.	6. 19	통일부고시	제98-2호
	1999.	8. 16	통일부고시	제99-2호
	2000.	9. 28	통일부고시	제2000-1호
	2001.	12. 31	통일부고시	제2001-6호
	2002.	10. 24	통일부고시	제2002-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공고하고, 남북한 교역물품의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한교역대상물품)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으로 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분류목록표에 의한다.

제3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① 남북교역대상물품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추천·화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2. 반입물품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 포함), 음반,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 필름 및 영화·비디오물을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3.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기재한 품목
 4. 반입물품으로서 컴퓨터
 5. 영 제 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공산물. 다만,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2) 물품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거래형태와 대금 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제4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사업승인의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한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5.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제5조(반출·반입승인신청서등)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반출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6조(반출·반입승인 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부 칙<2002·10·24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신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물양에 한하여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별표1 승인을 요하는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	0102-10-1000	소(종우/젓소)
2	0102-10-2000	소(종우/육우)
3	0102-10-9000	소(종우/기타)
4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이분도체)
5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채 절단)
6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 것)
7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8	0202-20-0000	쇠고기(냉동/뼈채 절단)
9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10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11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어깨살/뼈채 절단)
12	0203-29-0000	돼지고기(냉동/기타)
13	0207-12-0000	닭고기(미절단/냉동)
14	0207-14-1010	닭고기(다리/냉동)
15	0207-14-1020	닭고기(가슴/냉동)
16	0207-14-1030	닭고기(날개/냉동)
17	0207-14-1090	닭고기(기타/냉동)
18	0207-33-0000	오리고기(냉동/미절단)
19	0207-36-1000	오리고기(냉동/절단육)
20	0301-99-9070	미꾸라지(환어)
21	0306-14-3000	꽃게(냉동)에 한함.
22	0306-14-9000	게(냉동/끓은대게, 대게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에 한함)
23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엄장·엄수장)
24	0306-24-101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에 한함.
25	0306-24-1090	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 끓은대게, 대게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에 한함)
26	0307-29-1000	가리비(냉동)
27	0307-49-1020	오징어(냉동)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28	0307-59-1020	낙지(냉동)
29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0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 지방분 1.5% 이하)
31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2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3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4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5	0402-91-1000	무당연유
36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37	0402-99-1000	가당연유
38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39	0403-90-1000	버터밀크
40	0404-10-1010	유장분말
41	0404-10-1090	유장(유장분말 이외)
42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43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 이외)
44	0409-00-0000	천연꿀
45	0410-00-3000	로얄제리
46	0701-10-0000	감자(종자용)
47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48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49	0703-20-1000	마늘/탈피한것(신선·냉장)
50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냉장)
51	0709-60-0000	고추류(신선·냉장)
52	0710-80-2000	마늘(냉동)
53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54	0711-90-5099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의 것)
55	0712-20-0000	양파(건조)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56	0712-90-1000	마늘(건조)
57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58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59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60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61	0714-20-1000	고구마(신선)
62	0714-20-2000	고구마(건조)
63	0714-20-3000	고구마(냉장)
64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 고구마 이외)
65	0714-90-9090	서류(기타)
66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67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68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9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70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71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72	0810-90-3000	대추(신선)
73	0813-40-2000	대추(건조)
74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75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76	0910-10-0000	생강
77	1003-00-9010	겉보리
78	1003-00-9020	쌀보리
79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80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81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82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83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84	1006-10-0000	벼
85	1006-20-1000	메밀미
86	1006-20-2000	찰밀미
87	1006-30-1000	맬쌀
88	1006-30-2000	참쌀
89	1006-40-0000	쇄미
90	1007-00-1000	수수(종자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91	1008-10-0000	메밀
92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93	1102-30-0000	쌀가루
94	1102-90-1000	보리가루
95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96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97	1103-19-2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98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99	1103-19-3000	쌀(분쇄물 및 조분)
100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101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02	1103-20-1000	밀(펠리트)
103	1103-20-2000	쌀(펠리트)
104	1103-20-3000	보리(펠리트)
105	1103-20-9000	곡물(기타/펠리트)
106	1104-19-2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7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8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09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10	1104-29-2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1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2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113	1104-29-1000	율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14	1104-29-9000	곡물(압착·플레이크 이외)
115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16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117	1108-11-0000	밀 전분
118	1108-12-0000	옥수수 전분
119	1108-13-0000	감자 전분
120	1108-14-0000	대니옥 전분
121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22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대니옥·고구마 이외)
123	1108-20-0000	이눌린
124	1201-00-10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25	1201-00-9000	대두(기타)
126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27	1202-20-0000	낙화생(탈각)
128	1207-40-0000	참깨
129	1207-99-1000	들깨
130	1211-20-1100	수삼
131	1211-20-1210	백삼(본삼)
132	1211-20-1220	백삼(미삼)
133	1211-20-1240	백삼(잡삼)
134	1211-20-1310	홍삼(본삼)
135	1211-20-1320	홍삼(미삼)
136	1211-20-1330	홍삼(잡삼)
137	1211-20-2110	인삼분(백삼)
138	1211-20-2210	홍삼분
139	1211-20-2220	홍삼 타블렛·캡슐
140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블렛·캡슐 이외)
141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42	1211-20-9200	인삼종자
143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44	1213-00-0000	곡물의 쪄와 껍질(벼짚에 한함)
145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46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배일 이외)
147	1302-19-1110	인삼정(백삼)
148	1302-19-1210	홍삼엑스
149	1302-19-1220	홍삼엑스분
150	1302-19-1290	기타 홍삼의 액즙과 엑스
151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2	1702-11-1000	유당
153	1702-19-1000	기타 유당
154	1702-90-1000	인조꿀
155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56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57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58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159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0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61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62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3	1902-19-2000	당면
164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것)
165	2008-11-9000	낙화생 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66	2008-19-9000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 류
167	2009-31-9000	감귤류 주스(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것 /레몬·라임 이외)
167-1	2009-39-9000	감귤류 주스(기타/레몬, 라임 이외)
168	2103-90-1030	고추장
169	2103-90-9030	혼합조미료
170	2103-90-9040	메주
171	2103-90-9090	혼합조미, 조제품 기타
172	2106-90-3019	인삼류(기타 백삼 제품류)
173	2106-90-3021	홍삼차
174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75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의 것
176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177	3505-10-3000	배소전분
178	3505-10-400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179	3505-10-500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
180	3505-10-9000	기타 변성전분(기타)
181	3505-20-1000	전분 글루
182	3505-20-2000	텍스트린 글루
183	3505-20-9000	기타 글루
184	5004-00-0000	견사
185	9613-1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
186	9613-2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

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정 1994. 6. 20 통일부고시 제94-1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개정 2001. 4. 18 통일부고시 제2001-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간 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또는 선박 등 수송장비 운행승인(이하 "운행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 운행승인의 신청)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운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행계획서(운행경위 및 승무원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 내역서(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부
3.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제3조(선박운행승인의 신청)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선박운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접촉승인서 사본
2. 운행계획서 1부
3. 선박제원 1부
4. 선박국적증서 1부
5.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화물 운송사업)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보험증서(P&I증명서) 1부
8. 선원명부 1부
9. 통신체계도 1부
10. 항로도 1부
11. 선박검사증서(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2.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정부 및 대한적십자사물자를 수송하는 경우 및 수산물을 수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13.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남북간 부정기 4회 이상 선박운행을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정기운행신청에 한한다) 1부
1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제4조(대리승인신청) 대리인이 운행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3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에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조의 경우는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5조(변경승인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에 제2조 내지 제3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 중 변경사항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자료 요구) 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2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 외에 운행승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이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 대해 승인을 할 때에는 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은 별지 제4호 서식, 선박은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발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 2001. 12. 31 통일부고시 제 2001-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선박운행의 안전을 위한 선박운행승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기운행"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간을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2. "정기운행"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남북한간을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정기운행 승인기준) 통일부장관은 부정기운행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또는 부정기운행 실적이 다음 각호에 규정된 승인요건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는 선박운행승인신청인과 북한측의 책임 있는 기관간에 체결되어야 할 것
2. 급박한 운항일정 등의 사유로 북한측으로부터 계약서를 갈음하는 입항허가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입항허가서에 수송장비명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
3. 선박운행승인신청인은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선박운행승인신청인은 최근 6개월 이내에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4조(정기운행 승인기준) 통일부장관은 정기운행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또는 부정기운행 실적이 다음 각호에 규정된 승인요건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남북한간 정기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는 선박운행승인신청인과 북한측의 책임 있는 기관간에 체결되어야 할 것
2. 정기운행에 투입될 선박은 정기운행에 적합한 규모·구조·장비 등을 갖출 것
3. 선박운행승인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부정기적으로 4회 이상 선박을 운행한 자로서, 부정기운행 기간 중에 경고·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5조(대리신청 승인기준) 통일부장관은 대리인이 운행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선박수리·선원교대·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순경유하기 위해 운행하는 경우
3. 기타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정 1994. 2. 5 (관세청고시 제94-861호)
개정 1996. 6. 19 (관세청고시 제96- 41호)
개정 2001. 5. 29 (관세청고시 제2001-2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남북교역물품 통관에 따른 처리지침을 정하여 남북물자 교류시 통관업무의 원활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물품”이라 함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반출물품”이라 함은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대외무역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1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3-2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규정된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제 2 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제4조(물품의 장치)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은 당해물품의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 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반입절차) ①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3-1조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탁가공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의한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관세)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내국세 등) ①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육세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1조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제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 제8조(물품가격의 결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관세표준에 사용되는 물품의 가격은 관세평가시행세칙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 ② 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격을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당해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반출 및 환급절차)** ①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수출입통관요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승인을 받은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반출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제조·가공한 후 재반입할 것을 전제로 반출한 물품 및 제3국으로 물품으로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북한 위탁가공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북한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구비조건 등의 확인) 남북교역물품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승인, 추천 또는 기타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교역물품의 표시) 남북교역물품을 반출입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고무인을 반출입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날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준용)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면제대상 반출입물품의 통관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일반규정을 따른다.

제 3 장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제13조(원산지 확인).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14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2. 우편물(관세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휴대품이나 별송품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5.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가격 기준은 동일한 송하인과수하인 간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제15조(원산지 확인에 있어 직접운송원칙) ① 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함께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세관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수출대상국 및 선하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확인 항해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는 발송인, 수화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수단, 원산지, 수출대상국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의상품검사위원회”,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제17조(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① 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여행자휴대품 등 수입승인면제물품을 포함한다) 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진문구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제거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1. 관세법 제146조(수출입의 금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5. 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동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및 그 부장물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의 확인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관리세칙을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18조(조사의뢰) 세관장은 반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세법칙 등의 조사를 의뢰한다.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 한 때
- 2.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

제19조(반출입 통계) ①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계는 무역 통계에관한기본지침에 불구하고 무역통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 ②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계작성은 별도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보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반송, 관세법칙 등의 조사의뢰(즉시)
- 2. 기타 반출입물품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제21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 관세관계규정을 준용한다.

9.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부 칙(관세청고시 제94-861호, 1994.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 2.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비조건의 확인) 제10조에서 구비조건의 확인이라 함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남북교역물품통관요령(관세청 예규 제137-0-00-219호, '90. 9. 4)은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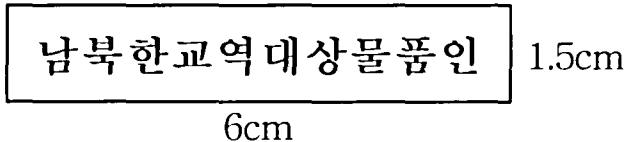
부 칙(관세청고시 제96-41호, 1996. 6.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1-24호, 2001. 5.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고시 제11조 관련)



10.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예관한규정

제정 1994. 12. 1 통일부고시 제94-2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개정 1999. 5. 28 통일부고시 제99-1호

제 1 조(목 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예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협력사업"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목의 1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 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 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예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
-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 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목의 1을 단독으로 또는 상대방 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주된 협력사업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1중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가.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다.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 기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제 4 조(사업실적 인정범위) 영 제30조제2호의 “사업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인 경우 해당 협력사업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주된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기계·설비의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2.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은 해당 협력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업실적(사업 수주실적 포함)

3. 기타 특수업종인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실적

제 5 조(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 구비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협력사업의 개요설명서(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수행방식, 사업상대방, 진출지역, 생산품목, 생산능력, 예상투자규모·투자비율, 자금조달 방법, 제품판매 계획,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포함) 1부
3. 의향서 사본 1부
4.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 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구비서류가 불필요하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매 사업별로 특정 구비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수시방북 승인) ① 통일부장관은 경제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0.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예관규정

②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협력사업자는 증명서 발급대상자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매 귀환 후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북 7일전까지 동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1부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 동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영 제34조제1항제5호의 "기타 동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 조사결과 1부(수송, 전력, 통신, 항만, 용수, 노동력 등을 포함)
3. 제3조제2호의 방법에 의한 대북투자의 경우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기업 창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

제 9 조(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의 기재방법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 의한 "기재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투자계획(현물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필요한 반출입 물자의 상세 목록 포함)

- 나.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 다. 생산 및 판매계획
 - 라. 조직 및 인력계획
 - 마. 추진일정 계획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사업상대자의 연혁·조직·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측 당사자가 북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는 사업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존속기간 및 적용법규
 - 나. 협력사업 당사자의 성명, 주소
 - 다. 출투자액, 출자비율, 등록자본금 및 증감가부, 출자방식, 출자자산평가방법, 출자 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 라.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의결정족수, 이사회 소집절차 등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마. 회사 등의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자재조달 방법
 - 바. 당사자의 임무
 - 사.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에 관한 사항
 - 아. 결산 및 이윤의 분배·적립, 송금보장에 관한 사항
 - 자. 세금, 회계에 관한 사항
 - 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카. 효력발생 조건
 - 타. 회사 등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및 이로 인한 의무 불이행의 해결방법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

나. 인원의 신변보장 및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기재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류별로 특정사항의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사업 승인 이후의 투자절차)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협력사업 승인 이후 투자절차에 관하여는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12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영 제38조제1항제6호의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 등의 규약(채택일로부터 20일이내)
2.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증 등 제증명서의 취득사항(발행일로부터 20일이내)
3.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
4.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처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신청과 그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총 투자액이 미화 300만 불 이하일 경우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
3.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일 경우

〈부칙 및 별표 생략〉

11.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정 1994. 12. 1 통일원고시 제94-3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1998. 12. 31 통일부고시 제98-4호

제 1 조(목 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 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무소의 기능)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1.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2.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의 비영업적 활동
3.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 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의 위임대리 업무

제 3 조(사무소의 설치 승인) ①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무소 설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2. 사무소의 업무활동 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 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은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4 조(승인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 5 조(승인 처리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삭 제>

제 7 조(사무소의 폐지) ① 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무소 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삭 제>

제 9 조(사무소 설치 보고 등) ① 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 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설치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 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5호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
2.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
3.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
4.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5.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
6. 사무소의 명칭 또는 위치 등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 내용(변경사유 증빙서류 사본 첨부)
7.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승인의 취소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재원의 감축·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사무소 설치 승인의 취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주재원의 북한방문) ① 통일부장관은 사무소 설치 승인이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파견 주재원이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재원의 신청에 의하여 1년6월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주재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의거 매 귀환 후 증명서를 통일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 수시방북 승인을 받은 주재원은 승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방북 만료기간 30일 전에 기간연장이 필요한 사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시방북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외국환의 사용)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 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사용은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부칙 및 별지 생략〉

12. 남북협력기금법

- 제정 1990. 8. 1 법률 제4240호
-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 1993. 12. 31 법률 제4675호(국채법)
- 1996. 12. 12 법률 제5170호
(재정융자특별회계법)
-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
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1999. 5. 24 법률 제5982호(정부조직법)
- 1999. 12. 31 법률 제6075호(국채법)

제 1 조(목 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 3 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4 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 5 조(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삭제 <93.12.31>

제 7 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

12. 남북협력기금법

- 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기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개정 '93.12.31〉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

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생략〉

1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정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37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직제)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재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 3 조(채권의 발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 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 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률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 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 4 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 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5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 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조(기금운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 4. 추정대차대조표
- 5. 추정손익계산서
-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조(기금의 지원 등의 절차)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 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 3. 법 제8조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 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 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 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 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지원의 방법) ①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관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기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 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생략〉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정 1991. 3. 27 총리령 제384호
개정 1998. 6. 1 통일부령 제3호
(동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자금지원·손실 보전 또는 비지정동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 보조의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비 등 기본적 경비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미만의 지원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 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예외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칙 생략〉

15.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정 1991. 4. 17 통일원고시 제91-1호
 개정 1998. 5. 12 통일원고시 제98-1호
 1998. 12. 31 통일부고시 제98-4호
 1999. 10. 27 통일부고시 제1999-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 2 장 기금의 관리

제 3 조(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4 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 내에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위탁수수료)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여유자금의 운용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금의 업무

제 7 조(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이하 “손실보조”라 한다)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용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 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하 “민족공동체회복 지원”이라 한다)

제 8 조(채무의 조정)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 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 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 4 장 무 상 지 원

제1절 주민왕래지원자금

제 9 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원의 우선순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 2.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제12조(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 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13조(지원절차) ① 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14조(지원통화) ① 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 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15조(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축소, 중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지원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절차, 제16조의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제18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9조(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지원절차) ①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

한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한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지원자금의 관리)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삭 제>

제23조(지원자금 사용결과 보고) ①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련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관련 사업의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4조(지원통화) ① 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② 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 원화로 한다.

제25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원절차, 제21조의 지원자금의 관리, 제23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장 손실보조

제26조(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 다.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실 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투자원본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원금과 약정이자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다.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라.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27조(보조할 손실의 범위)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
2.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제28조(배당금 손실의 인정) ① 제26조제2호의 라목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합계액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가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 이내로 한다.

제29조(손실보조 약정절차)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하여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다.

제30조(업무취급 수수료)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손실보조약정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업무취급수수료"라 한다)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날을 기한으로하여 수납한 후 손실보조약정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손실보조약정의 효력) ① 손실보조약정의 효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취급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발생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보조약정을 신청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피약정자"라 한다)는 물품의 반출, 용역의 제공 또는 현금을 송금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삭 제>

제34조(업무취급수수료의 환급) ①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후 피약정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반출·반입, 용역의 제공, 송금의 개시 등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은 업무취급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에 환급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 손실보조약정증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취급수수료를 피약정자에게 환급한다.

제35조 <삭 제>

제36조(손실보조금 지급)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조금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100분의 90이내에서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 교역·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손실의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면 책) ① 기금은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기금은 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손실보조약정 해지 등) 기금은 피약정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손실보조약정을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9조(손실보조금의 반환)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손실보조금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피약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동일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요율은 동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대위권) ① 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약정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피약정자는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회수금 통지)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받기전 또는 지급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

는 회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회수계산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

제42조(회수금의 납부) ① 피약정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연체이자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마다 동 금액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금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피약정자는 손실보조약정증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매 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 1 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44조(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제45조(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6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7조 <삭 제>

제48조(대출절차)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49조(사업보고)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명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인보를 익년도 6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대출금 상환) ①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대출조건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일로부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51조 <삭 제>

제52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거쳐 제44조의 대출의 대상, 제45조의 대출비율, 제46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반출·반입자금 대출 등

제53조(반출·반입자금 대출) ①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제45조, 제46조,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2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③ <삭 제>

제54조(결과보고)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출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동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동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7 장 채 무 보 증

제55조(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56조(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나. 보증기간은 당해 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6. 담보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57조(보증절차) ①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8 장 금융기관 지원업무

제 1 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58조(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북한원화의 동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나. 북한원화의 동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다. 북한원화의 동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제59조(손실보전 신청 등) ① 금융기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1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제60조(보진이자율 등)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 기초가 되는 보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2 절 금융기관융자자금 지원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61조(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 취급액 범위내에서 자금지원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채권인수

제62조(지원절차) ① 금융기관이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융자자금 지원신청서 1부를,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 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제63조(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3 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64조(북한원화의 인수신청) 금융기관은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매수할 수 있다.

제65조(인수조건 등)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6조(북한원화의 환진) 재정경제부 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장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제67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8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기금이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융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9조(지원금액·지원조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협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장 보 칙

제70조(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71조(기금의 출연) ①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동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이 규정 및 동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및 별지 생략〉

16.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 1999. 10. 27 통일부고시 제1999-4호
개정 2001. 12. 31 통일부고시 제2001-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3.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4.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에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제외한 교역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5.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지역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9. “금융기관”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10.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1. “장기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회사채등급을 말한다.
12.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제3조 (대출대상)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44조에서 정한 자로 한다.
 ② 반출·반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우선지원대상) 제3조에서 규정한 대출대상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한다.

1. 중소기업자
2. 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
3.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보건관련 물품을 반출하는 자
4. 농작물 계약재배·가공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을 반입하거나, 수산물 계약채취·가공을 위해 어선 및 어구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수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5. 유희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하는 자
6. 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한 자
7. 농업 및 어업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물류비 절감 등 경험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5조 (대출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현지법인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나. 대외무역법
 - 다. 관세법
 - 라. 외국환거래법
 - 마. 기타 전 각목에서 정하지 않은 대외거래·외국환관련 법령

3.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4.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다만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금융상의 재재를 받은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5. [별표 1]에서 정한 대출제한기업에 해당하는 자. 다만, 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경제협력추진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외취급할 수 있다.
6.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경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7. 본기금 이외의 금융자금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제 2 장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6조 (대출금액) ①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금액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70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제4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출금은 소요자금에서 기금지원방침 결정전에 자기자금이나 북한 또는 제3국 금융기관의 대출등으로 조달한 투자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대출형식) 대출은 증서대출로 한다.

제8조 (대출표시통화) ① 대출표시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 지원대상사업 계약서의 표시통화와 대출표시통화가 서로 다를 경우 원화환산은 대출승인신청 직전영업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9조 (회수통화등) 대출원금 및 이자는 당해 대출표시통화로 받는다.

- 제10조 (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 대출이자율은 대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전월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의 평균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이자율 산출시 소숫점 두자리 이하는 버린다.
- ③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연 15%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다.
- ④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이자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⑤ 이자는 매 6월단위로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집행 등의 경우에는 선취할 수 있다.

제11조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8년 이내로 한다.

제12조 (상환방법) 대출원금은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 제13조 (채권보전) ①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 등의 신용도와 지원대상 사업의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담보를 취득하거나 신용으로 취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이 양호한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제13조의2 (신용대출 대상 및 한도) ① 제1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대상자는 장기신용등급과 기업신용등급이 [별표 2]에서 정한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자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의 경우에는 교역기간과 연간 교역규모를 고려하여 [별표 3]에서 정한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 기업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신용대출한도는 [별표 4]와 같이 차주별로 산정한다.
- ③ 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신규승인액, 기승인액중 미집행잔액 및 기대출잔액의 합계액에서 담보대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별표 4]에서 정한 차주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차주보다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순자산이 큰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인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다.

제14조 (지원방침의 유효기간) ① 지원방침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월로 한다. 다만, 대상거래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내에 대출금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지원방침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이 있고 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방침 통지를 받은 자의 취소신청이 있으면 지원방침은 그 신청일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 3 장 반출·반입자금대출

제 1 절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자금대출

제15조 (대출금액) ①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 대출금액은 반출목적물의 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100분의 7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4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②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 대출금액은 반입금액(반입선금금액과 운임·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4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 ③ 계약재배·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위한 종자와 농자재 반출비용을, 계약채취·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어선과 어구자재 반출비용을 반입선금금액으로 본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대출금은 반출계약금액 또는 반입금액에서 기금지원방침 결정전에 자기자금으로 조달한 소요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이자율 및 이자정수방법) ① 대출이자율은 대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전월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의 평균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 산출시 소숫점 두자리 이하는 버린다.
③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연 15%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다.
④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이자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이자는 매1월 단위로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출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자받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대출기간) ①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이내에서 최종 물품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반출대금이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역 당사자간의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반출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기타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이내에서 최종교역물품 반입대금 결제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제18조 (상환방법)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 자금 대출원금의 상환은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제19조 (기타 대출조건) 기타 대출조건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9조, 제13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 2 절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제20조 (대출금액) ① 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 시행자에 대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금액은 제2항의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7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4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② 대출한도는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내로 한다.

1. 대출승인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위탁가공반입금액(위탁가공품의 제3국 수출금액을 포함한다)
2. 대출승인 신청 직전년도에 연간 위탁가공반입금액(위탁가공품의 제3국 수출금액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대출한도 설정시 위탁가공반입금액의 원화환산은 대출승인신청 직전영업일에 고시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④ 1년 미만 위탁가공교역 시행자에 대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금액은 개별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7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4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⑤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 대출금액은 설비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7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4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소요자금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원부자재의 구입 및 운송비
2. 설비의 구입·포장·운송 및 현지조립·설치비
3. 유흥산업설비 반출의 경우 제2호와 설비의 성능검사 및 해체·보수비

제20조의2 (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 대출이자율은 대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전월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의 평균으로 한다.

② 다만,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의 경우에는 개별대출집행시마다 이자율을 각각 산정한다.

③ 제1항의 이자율 산출시 소숫점 두자리 이하는 버린다.

④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연 15%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다.

⑤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이자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⑥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금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 대출금 이자는 매 6월 단위로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출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자받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대출기간) ①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의 개별대출집행 유효기간은 대출한도 설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의 대출기간은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위탁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수출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 ③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역 당사자간의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품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상환방법) ①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원금의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②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 대출원금은 연 2회 이상 정기균등 분할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제23조 (기타 대출조건) 기타 대출조건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9조, 제13조 내지 14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24조 (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 결을 거쳐 경제협력사업자금 및 반출·반입자금대출의 대출금액,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 대출기간 등을 달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개정) 생략

부 칙 < 2000. 11. 21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1. 12. 31 >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인된 거래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대출제한기업

1.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 발생기업
2.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3.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별표 2] 신용대출 대상기업

1. 장기신용등급 보유기업

- 가. 대출기간 5년 초과 : 장기신용등급 AA 이상
- 나. 대출기간 5년 이하 : 장기신용등급 BBB 이상

2. 장기신용등급 미보유기업

- 가. 대출기간 2년 초과 : 기업신용등급 P3 이상
- 나. 대출기간 1년 초과 : 기업신용등급 P4 이상
- 다. 대출기간 1년 이하 : 기업신용등급 P5 이상

[별표 3] 기업신용등급 상향 조정 기준

연평균 교역규모	교역 기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초과	
5만 달러 미만							
5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상							
15만 달러 이상							
20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이상					상향평가대상		
100만 달러 이상							

주 : 연평균 교역규모는 최근 4년간 남북교역(반출 및 반입) 실적기준(당해년도는 연간 실적으로 환산)

[별표 4] 차주별, 개별대출별 신용한도

1. 장기신용등급 보유기업

장기신용등급	차주별 신용한도
AA 이상	순자산의 70%
A 이상	순자산의 60%
BBB 이상	순자산의 50%

2. 장기신용등급 미보유기업

기업신용등급	차주별 신용한도
P1	순자산의 60%
P2	순자산의 50%
P3	순자산의 40%
P4	순자산의 30%
P5	순자산의 20%

상 담 안 내

남북교역에 관한 문의·상담은 통일부(교역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의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교역과)

- ▶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 ▶ 전 화 : 02)722-8911
- ▶ F A X : 02)3703-2449
- ▶ 홈페이지 : www.unikorea.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북위탁가공교역지원센터)

- ▶ 주 소 : (137-170) 서울 서초구 압곡동 300-9
- ▶ 전 화 : 02)3460-7417~8
- ▶ F A X : 02)3460-7938
- ▶ 홈페이지 : www.kotra.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남북협력지원센터)

- ▶ 주 소 : (150-7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 ▶ 전 화 : 02)769-6620~9
- ▶ F A X : 02)769-6858
- ▶ 홈페이지 : www.bizonk.or.kr

▶ 지방상담창구

구 분	위 지	전 화
부 산 지 부	부산시 부산진구 범진동	051)630-7400
울 산 지 부	울산시 남구 무기동	052)277-3283
대구·경북지부	대구시 수성구 수성 2가	053)601-5288
인 천 지 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032)450-0500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062)600-3000
대전·충남지부	대전시 유성구 장동	042)866-0114
경 기 지 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031)259-7900
의 정 부 지 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031)878-0747/8
충 북 지 부	충북 청주시 송정동	043)230-6800
전 북 지 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063)213-2130
경 남 지 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055)269-5800
강 원 지 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동 1가	033)256-9611/3
강 령 지 부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033)646-9967/8
제 주 지 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064)751-2055

❖ 한국무역협회(남북교역팀)

- ▶ 주 소 : (135-729)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층
- ▶ 전 화 : 02)6000-5242~5
- ▶ F A X : 02)6000-5237
- ▶ 홈페이지 : www.kotis.net
- ▶ 지방상담창구

구 분	위 지	전 화
강 원 지 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033)256-3067~8
경 기 지 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031)259-7850
경 남 지 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055)282-4115~6
광 주·전 남 지 부	광주시 유산동	062)943-9400~1
대구·경 북 지 부	대구시 신천동	053)753-7531~3
대전·충 남 지 부	대전시 창동	042)864-4620~2
부 산 지 부	부산시 중앙동	051)462-5166~9
인 천 지 부	인천시 주안동	032)420-0011~3
전 북 지 부	전북 전주시 금암동	063)214-6991~2
충 북 지 부	충북 청주시 문연동	043)236-1171~3

* 남북교역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안내책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상담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남북교역실무안내

2002년 12월 24일 인쇄

2002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처 :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역과

TEL. 02)722-8911

FAX. 02)3703-2449

인쇄처 : 삼일문화정보(주)

TEL. 02)2277-7122

FAX. 02)2277-7123

【비매품】

